

\_\_\_\_\_




178 2009. 3. 5( )

.....

**조 례**

877	-----	2
878	-----	2
879	-----	3
880	-----	6

**규 칙**

703	-----	9
704	-----	13
705	-----	21

**예 규**

109	-----	132
-----	-------	-----

**훈 령**

178	-----	134
179	-----	135

**공 고**

2009-163	-----	135
2009-172	가 -----	135

--	--	--	--	--	--	--	--	--	--	--

\_\_\_\_\_

**조 례**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87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조** 중 “627명”을 “6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6명”을 “13명”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1% 이내	30% 이내	32% 이내	9% 이상

**2. 기능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0% 이내	32% 이내	28% 이상

**3. 별정직**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9급 상 당
비 율	7% 이내	19% 이내	48% 이내	24% 이내	2%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b>총계</b>	624			-		
<b>정무직계</b>	1			-		
구청장	1	1				
<b>일반직계</b>	541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7	18	1	4	1	13
6급 이하계	498			-		
<b>별정직계</b>	2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계	1			-		
<b>기능직계</b>	80			-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878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각각 “임대사업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을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사업용” 을 “아파트형 공장용”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15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1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879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2항”을 “영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의 가.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일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3만원 22만원 32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42만원 50만원 64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3만원 4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 금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 금액
<p>나. 현수막</p> <p>(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p>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p>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종과</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2만원</p> <p>25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75만원</p> <p>80만원</p> <p>+15만원</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0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75만원</p> <p>80만원</p> <p>+15만원</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p> <p>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p> <p>·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p> <p>·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장당17천원</p> <p>장당25천원</p> <p>장당42천원</p> <p>장당25천원</p> <p>장당33천원</p> <p>장당50천원</p> <p>장당8천원</p> <p>장당17천원</p> <p>장당25천원</p> <p>장당25천원</p> <p>장당33천원</p> <p>장당50천원</p> <p>25만원</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p> <p>(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p> <p>(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2조의2 관련)**



비고

-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가· 신고 번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8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의회 및 의정발전과 구정 및 지역발전,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 ⑤ 공적심의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등재)**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성 명		(한자)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경우)		
(3)국 적			
(4)주 소			
(5)직 업	(6)소 속		
(7)직 위	(8)직 급. 계 급	(9)공 적 기 간	
(10)공적요지(50자내외)	(11)공 적 분 야 코드	-	
(12)추천훈격			(13)추천순위
<b>조 사 자</b>			
(14)소 속			(15)직 위
(16)직 급			(17)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b>주요학력 및 경력</b>			
(18)년 월 일	(19)이 력	(20)년 월 일	(21)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년 월 일	(23)내 용	(24)년 월 일	(25)내 용
(26)공 적 사 항			

###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세)	수공 기간	주 요 공 적	비고
			0년0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소속기관		②직위		③직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군 번 (군인)			
⑦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무원의종류		⑫ 특 정 직	
⑧ 일 반 직	년 월	⑬ 교 원	
⑨ 별 정 직		⑭ 군 인	
⑩ 기 능 직		⑮ 군 무 원	
⑪ 고 용 직		⑯ 기타( )	
합 계 (가)			년 월

⑰ 제외기간	휴직 :	직위해제 :
합 계 (나)		년 월 일

⑱실 재직기간 (가)-(나)	년 월	⑲ 추천훈격
-----------------	-----	--------

⑳징계.형벌 종류 일자	㉑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㉒ 작성자		㉓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p>[별지 제5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공 적 심 사 의 결 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25%;">(한자)</td> <td style="width: 2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직 업</td> <td>소 속</td> <td>직 위</td> <td></td> </tr> <tr> <td>추천훈격</td> <td colspan="3"></td> </tr> <tr> <td>의결주문</td> <td colspan="3"></td> </tr> <tr> <td>이 유</td> <td colspan="3"></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년 월 일</div> <p>공적심사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 margin-left: 40px;"> <tr> <td style="width: 60%;">위원장</td> <td style="width: 40%;">(인)</td> </tr> <tr> <td>위 원</td> <td>(인)</td> </tr> </table>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위원장	(인)	위 원	(인)	<p>[별지 제6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포 상 대 장</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rowspan="2">호수</th> <th rowspan="2">포상 년 월일</th> <th rowspan="2">포상 종별</th> <th rowspan="2">포상 기관</th> <th colspan="4">피 포 상 자</th> <th rowspan="2">공적 개요</th> <th rowspan="2">부상</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직위 또는 직급</th> <th>소속 또는 주소</th> <th>성별</th> <th>성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5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p>	호수	포상 년 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공적 개요	부상	비고	직위 또는 직급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호수	포상 년 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공적 개요	부상	비고																																																		
				직위 또는 직급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규 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70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로, “구본청”을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를 “부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표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계	보건소	덕천 지소	계	문화빙상 센터	디지털 도서관	
총계	624	393	13	47	33	14	25	15	10	146
정무직	1	1								
일반직계	541	331	8	41	27	14	15	7	8	14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1					
행정	2	1	1							
기술	2	1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37	18	1	4	3	1	1	1		13
행정	22	13	1				1	1		7
시설	3	3								
의무	3			3	2	1				
행정*환경	3	1								2
행정*보건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1					
행정*시설	2									2
6급 소계	113	80	1	7	5	2	3	2	1	22
행정	73	49	1	1	1		2	2		20
세무	6	6								
시설	7	7								
전산	1	1								
녹지	1	1								
약무	1			1	1					
간호	1			1	1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1	
보건	1	1								
공업	1	1								
행정*사회	3	2								1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	2	2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1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3	3								
행정*간호	1			1	1					
환경*공업	1	1								
약무*보건*의기	1			1	1					
보건*간호*의기	1			1		1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등
				계	보건소	덕천 지소	계	문화방상 센터	디지털 도서관	
<b>7급 소계</b>	<b>162</b>	<b>115</b>	<b>3</b>	<b>14</b>	<b>10</b>	<b>4</b>	<b>6</b>	<b>3</b>	<b>3</b>	<b>24</b>
행정	94	67	3	3	2	1	3	2	1	18
세무	11	11								
사회복지	11	5								6
시설	16	16								
전산	3	2					1		1	
공업	6	5					1	1		
녹지	2	2								
간호	7			7	5	2				
보건	4	2		2	2					
의료기술	2			2	1	1				
환경	2	2								
통신	1	1								
사서	1						1		1	
해양수산	1	1								
수의*농업	1	1								
<b>8급 소계</b>	<b>173</b>	<b>108</b>	<b>2</b>	<b>11</b>	<b>7</b>	<b>4</b>	<b>3</b>	<b>1</b>	<b>2</b>	<b>49</b>
행정	87	49	2	1	1		1	1		34
세무	16	16								
사회복지	26	11								15
시설	8	8								
전산	5	5								
공업	5	5								
녹지	3	3								
간호	6			6	3	3				
보건	4	2		2	1	1				
의료기술	2			2	2					
환경	3	3								
사서	2								2	
통신	1	1								
행정*식품위생	3	3								
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1	1								
<b>9급 소계</b>	<b>50</b>	<b>6</b>		<b>4</b>	<b>1</b>	<b>3</b>	<b>2</b>		<b>2</b>	<b>38</b>
행정	15						1		1	14
세무	-	-								
사회복지	27	2		1		1				24
시설	4	4								
의료기술	2			2	1	1				
사서	1						1		1	
보건	1			1		1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계	보건소	덕천 지소	계	문화빙상 센터	디지털 도서관	
별정직 계	2		1	1	1					
5급상당 소계	1		1							
구의회전문위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1					
결핵검사원	1			1	1					
기능직 계	80	61	4	5	5		10	8	2	
6급 소계	4	4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2	2								
7급 소계	12	12								
기계	1	1								
조무	4	4								
사무	3	3								
운전	3	3								
전기	1	1								
8급 소계	16	11		1	1		4	4		
기계	1						1	1		
운전	3	3								
전기	2	2								
사무	4	4								
조무	4	2					2	2		
보건	1			1	1					
통신	1						1	1		
9급 소계	25	15	4	2	2		4	2	2	
사무	5	3	2							
조무	8	7					1	1		
운전	6	4	1	1	1					
위생	1			1	1					
교환	1	1								
전기	2						2	1	1	
기계	1						1		1	
통신	1		1							
10급 소계	23	19		2	2		2	2		
사무	1	1								
조무	13	10		1	1		2	2		
운전	8	7		1	1					
교환	1	1								
통신	-									
보건	-									
전기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 3 5

704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기획감사실]**

구 분	사 무 분 장
기 획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감 사 실	2. 주요 업무보고 작성
	3. 주요업무 평가
	4.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
	5. 구정개발에 관한 시책 연구 및 구정소개 책자발간
	6. 도시행정 자료수집, 관리
	7.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총괄
	8. 지시사항 총괄
	9.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10. 구의회 관련업무의 총괄
	11. 구청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지방분권 및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13.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행정제도 및 행정사무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16. 자체 예산편성 및 승인신청
	17. 자원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관리
	18. 기채관리
	19.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조치
	20. 예산유용 결의 및 전출금 관리
	21. 전시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22. 투자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검토
	23.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24. 주요 예산집행 등에 따른 경영성 분석 및 개선·환류 (공사 1억 이상, 물품구입 500만원 이상, 불용매각, 구입가 500만원 이상)
	25.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26.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27. 무체재산(특허권)에 관한 사항
	28. 직제 및 정원관리
	29. 사무의 합리적 배분
	30. 사무의 이양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무 분 장
기 획	31. 구 법제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32. 자치법규 및 훈령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3.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감 사 실	34. 법규 및 예규문서의 편찬, 정비
	35.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수행
	36. 행정쟁송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37. 소송대리인 지정 및 소송 수행자의 지정
	38.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9. 국가의 각종 지정통계에 관한 통계조사
	40.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조사
	41. 통계연보 및 통계간행물 발간
	42.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
	43.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표준화 보급
	44. 전산시설의 장비운영 및 사후관리
	45. 전산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6. 전산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7. 전산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8. 전산 통신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9.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0. 각종 전산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51. 자체 행정감사 계획수립 시행
	52. 구분청, 동, 사업소·하부기관에 대한 종합 및 부분감사
	53.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의결사항 재심청구
	54. 회계감사, 계산증명, 세입세출회 현금관리감사 및 결과조치
	55. 사무인계인수 감사
	5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8. 민원감찰·검열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총괄
	59.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및 특명사항의 조사처리
	60.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1. 언론보도사항처리
	62. 도시환경보존과 구정저해요인의 사전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
	63.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총무국 소관]**

구 분	사 무 분 장
행 정 지 원 과	1. 소속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식전례에 관한 사항
	4. 보수연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및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표창,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당직, 보안에 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 직장방호에 관한 사항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직(정원의 상근인력 제외)업무 전반
	11. 공무원 노조 구지부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 행정의 조정통제 및 기반행정 육성
	13. 동 명칭, 위치, 구역조정 및 동지도 감독
	14.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모임 및 대화여론 행정
	16. 구정일지 기록관리 및 시·구정보고회 운영
	17.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18. 주민등록, 적령아동 취학에 관한 사항
	19.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행정 지원과	21.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22. 구민제안제도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23.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24.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도시 기초환경정비 및 구민 정신개발운동 관련 사항 26. 소관업무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7. 전시지원업무에 관한 사무 28.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0. 학교, 교육업무의 일반적인 사항 3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3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3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4.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35. 자치행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6. 국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7. 평생학습 정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38. 교육경비지원조례 등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9. 평생학습 홍보 40.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운영 41.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평생학습 기관·단체간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3.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특화사업 추진 44. 평생학습도시 축제에 관한 사항 45. 평생학습 관련 교육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46.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무 중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8. 특별사법경찰관리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9.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중 다른 실·과팀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문화 체육과	20. 공연신고 21.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22.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사항 23. 소관 업무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4. 각종 국제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구 체육회 운영 및 체육에 관한 사항 26. 체육시설 조성·관리 및 구민운동장 유지·관리 27.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중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28. 구민생활체육 및 구 실업팀 육성관리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재무과	1. 세출예산의 경리 및 세출의 결산사무 2. 계약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4.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5. 회계문서의 심사 6.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유·시유·국유 잡종재산관리 9. 구동·보건소(지소)·사업소 청사의 산·중축과 대수선(설계·용역, 감독) 10.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 11.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12. 행정재산 및 구영조물 총괄관리 13. 은닉재산 색출 및 등기등록 업무 14. 국공유 재산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사항 15. 관용차량 운영관리 16. 구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통신시설의 개발계획 수립시행 18. 팩시밀리 및 전화교환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19. 행정 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0. 정보통신설비 심의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1.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2.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화회선등)의 통합관리 23. 통신시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4. 초고속 국가종합통신망 구축설비 운영 및 관리 25. 광전송장비 초고속 다중화장비 설치운영 관리 26.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세무과	1. 세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지방세 홍보 및 제도개선 사항 3. 지방세 전산화 관련 종합 추진 4.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5. 세무조사 및 세원개발 사무 6. 탈세 정보처리 및 조세법적 지도단속 7.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8.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문화 체육과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시행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2. 문화예술사업 지원단체 지도육성 3. 도서관의 지도·감독 4. 유·무형문화재 보호관리 5.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 6. 문화재 매매업소허가 및 사후관리 7. 출판사 인쇄등록·사후관리 및 간행물 납본 8. 관광진흥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9. 관광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미술장식품 심의 신청·설치 및 사후관리 12. 공모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3.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14.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5. 구정 홍보용 필름(슬라이드 포함)제작 16. 구사편찬·복구신문·전자소식지 편집·발간 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관한 사항 18.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 19. 공연장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세 무 과	9. 지방세표 작성 10.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수보 및 전산관리 11. 납세당보에 관한 사무 12.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3. 세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4. 세입징수 총괄 및 재정계획, 목표액 조정 15. 세입통계, 결산, 소인, 과오납금 환부 및 총당금 관리 16. 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 사무 17.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8. 신고납부 세목의 직납부 작성 19. 수납장표(수납부, 체납부, 이월부)관리 20. 영수필통지서 관리 및 보관업무 21. 세외수입의 기획, 종합조정, 제도개선, 징수업무 총괄 (실·과 사항은 제외) 22. 세외수입 통계, 결산, 소인, 과오납금 환부 업무 2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실·과·동 세외수입 과징업무 지원 25. 구 금고 지도·감독	민 원	25. 대외문서 접수·배부
		봉 사 과	26. 문서수발 27. 우편물 관리 28. 수행인 명부관리 29.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30.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31. 가족관계등록 인구통태에 관한 사항 32. 여권업무 추진 관련 주요계획수립 33.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4.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회계관리 35. 기타 여권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민 원	1.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편람 발간 및 민원·제도개선사무 3. 고객만족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 친절운동 추진 5. 행정정보공동 이용, 전자민원 G4C 관리 6.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7. 전자민원 창구 운영 8.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9.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처리 11. 생활민원 접수·안내 12. 이미지용사, 조리사 면허증 13. 수입증지 판매 14. 민원서류 접수·심사 15. 고객안내 도우미 관리 16. 외국인 관리업무 17. 소관 업무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18.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19. 기록관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1.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 22. 공인관리 2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4. 규정자료실 운영	체 납	1. 체납정리 기획 및 종합에 관한 사무
		정 리 팀	2. 체납세에 대한 가산금 조정(추가산금 포함) 3.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무 4. 재산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무 5. 체납세 전산자료 종합관리 및 운용 6. 결손처분 및 이월부 작성 7. 공·교부청구·관허사업 제한등 체납처분 사항 8. 재산조회 및 세무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무 9.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0. 추정차위반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b>[주민생활지원국 소관]</b>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복 지		행 정 과	1. 구민복지증진 계획수립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활용 및 평가 3. 지역육구조사, 전산망 구축관리, 주민홍보 및 교육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및 관리 5.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7. 재해구호업무 총괄 8. 서무, 회계, 예산, 보안(총무계획) 9. 업무보고, 지시사항, 목표관리, 혁신 등 부서운영 총괄 10. 기타 국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11.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정기조사 및 계획수립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등 1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시비 특별지원사업 14. 차상위계층 대상자 관리 및 지원 15. 새터민 거주지 보호 16. 주거복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포함)와 관련된 업무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복 지 행 정 과	17.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된 업무 18.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급여증 발급 등 자격관리 19.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 사후관리 20. 행려자 관리, 의료급여 관련 전반 업무 2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변경 결정 22. 신규 기초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판정 및 자활지원 연계 23. 통합조사관련 계획수립,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24. 조사대상자 검증, 조사결정관리 25. 복지상당실 운영,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26. 동 복지상당창구 운영지원 27. 방문민원 초기상담, 각종 증명서 발급민원 28.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신고처리 29. 노사분규 조정지도 및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 30. 부당 노동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31. 노사안정차원의 협조·지원사항 32.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33.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장 배치관리 및 급여지원 34.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35. 자활협의체 관리, 근로장려금, 근로유지형 사업총괄 36.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단 관리 37. 자활기금 관리 38. 기타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39. 취업정보센터 운영 4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사항, 실업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41.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 42. 직업소개소 등록, 폐지, 변경 등 제등록 43. 직업소개소 관리 및 지도감독 44. 소관업무관련 세외수입 과징 45. 주민생활서비스업무 총괄	주 민 복 지 과	18.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19.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20.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21. 기타 보육관련업무 22. 장애인법인 및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및 지원 23.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시책 추진 24.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장애수당 등 관련 예산 지출 25. 청소년보호관련 계획수립 26. 청소년관련 시설운영 및 지도감독 27. 「청소년보호법」 관련 지도단속 28.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조치 29.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30. 중퇴청소년관리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31.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 지원 32. 청소년 공부방 지원 및 지도감독 33.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감독 및 지도자 양성교육 34.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 35. 결혼이주여성 지원 업무 36.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37.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38. 재가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주 민 복 지 과	1. 노인법인 및 노인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 3. 노인복지시설 공유재산 관리 4. 각종 노인행사 지원 및 관리 5. 이동목욕사업 지원 및 관리 6. 경로당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사에 관한 업무 8.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9. 기타 노인교통수당 등 관련 예산 지출 10. 서무, 회계, 예산, 보안 11. 업무보고, 지시사항, 목표관리, 혁신 등 부서운영 총괄 12. 기타 타 당당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 여성정책 추진 14. 여성, 한부모가족 관련 업무 (단, 한부모가족 신규 조사 및 책정 업무 제외) 1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법인 및 시설 포함) 16. 결식아동 지원 17. 아동상담 및 보호, 시설 입소·보육사업 계획수립	청 소 행 정 과	1. 생활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조정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4. 청소차량 관리·운영 및 청소시설 장비개선·보강 5.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6. 직접수거 처리하는 공동주택 수집·운반요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요금 과징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8. 청소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관리 9.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10. 공중용 일반폐기물 용기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 12.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13.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관리 14.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처리 지도 16.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확보·운영 17.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 및 장려금 지급 18. 소규모 소각로 설치신고 및 지도관리 19. 재활용단체, 재활용산업 육성 지도 2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및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22. 업소 1회용품 사용, 과대포장 등 규제사무 23.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재활용신고 대상 폐기물신고 수리 24. 소관업무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5.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26. 분노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27. 정화조 청소업허가 및 지도감독 28. 분노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29.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30.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31. 오수처리시설 등의 지도감독 32.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33.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선임(개임)신고수리 35. 오수발생량 산출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환경 위생과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측정,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제한 4.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및 신고 5. 「먹는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먹는물 시설 수질관리 종합 계획 수립 등) 6.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지하수중 음용수, 생활용수, 약수터, 비관리 간이상수도) 7. 수질검사 시료채취일 지정 및 시료봉인 8. 수질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안내문, 홍보, 소독, 미실시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9.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관리 10. 저수조 청소업 관리 11.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홍보 및 주민계도 13.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4.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15. 자연보호회 운영·관리 및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정비 16.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 총괄 17. 환경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관리 18. 배출,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명령 19. 배출업소 이전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및 공해감시 20. 소음, 진동 배출시설 규제 및 통제 21.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22.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23.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단속 및 조치명령 2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전반 25.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환경분야 민원처리 27. 토양오염 유발업소 및 측정망 관리 28. 공중위생업소 개선을 위한 종합지도 계획수립 시행 29.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30.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위생지도 31.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32. 식품위생 접촉업소 개선을 위한 종합지도 계획수립 계획 33. 공중위생식품위생,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관한 허가(신고) 사항 34.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35.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36. 영양사, 조리사 지도 및 실태조사 37. 전식 식품동원 계획수립 및 조정통계 38. 식품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39.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지도단속 40. 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 지도단속 41. 퇴폐, 변태영업행위 지도단속 42.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43. 기타 위생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4.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채납에 관한 사항 45. 운행차 배출가스에 관한 사항 4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7. 하수도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재산관리	환경 위생과	48.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9.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0. 지하수, 공업용수, 기타용수의 사용량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1.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사항 52. 낙동강 소관역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3. 잔류성 유기물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54.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청정 산업 녹지과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 수립시행 2. 경제동향 분석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3. 상표관리·가격표시제 실시 및 물가안정·불공정거래방지 4.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소비자고발센터등 운영 관리 5.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6. 방문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7. 제조당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통신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소비절약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저촉관련 업무 11. 산업진흥 및 상업행정에 관한 사항 12. 상품권 발행 및 등록에 관한 업무(자기발행형) 13. 농·축·수산물 취급 가격안정 및 원산지표시 관리 14.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가격안정 15. 축산물가공·보관업 허가 및 변경허가 16. 가축병원 등록관리 및 가축방역 17.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록관리 18.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19. 구포시장(도건, 도계 취급업소) 정비 관리 20. 축산물 운반업 신고 및 변경신고 21. 어선등록·어업허가 및 불법·부정어업 단속 22. 농·축·수산단체 육성 지도 23. 농정, 양정,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24.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5.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26.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집단공급, 충전가스용품 제조)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7. 가스업체(소),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28.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 냉동, 충전)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안전관리 30.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31.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32.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수리 33.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승인 34.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35. 석유 안전수급 계획 수립 36.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3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수리 38. 석유정량거래 지도단속 39. 유사휘발유 유통 및 경유 혼합방지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 검사 실시 40. 석유판매업소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청정 산업 녹지과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 수립시행 2. 경제동향 분석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3. 상표관리·가격표시제 실시 및 물가안정·불공정거래방지 4.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소비자고발센터등 운영 관리 5.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6. 방문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7. 제조당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통신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소비절약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저촉관련 업무 11. 산업진흥 및 상업행정에 관한 사항 12. 상품권 발행 및 등록에 관한 업무(자기발행형) 13. 농·축·수산물 취급 가격안정 및 원산지표시 관리 14.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가격안정 15. 축산물가공·보관업 허가 및 변경허가 16. 가축병원 등록관리 및 가축방역 17.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록관리 18.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19. 구포시장(도건, 도계 취급업소) 정비 관리 20. 축산물 운반업 신고 및 변경신고 21. 어선등록·어업허가 및 불법·부정어업 단속 22. 농·축·수산단체 육성 지도 23. 농정, 양정,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24.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5.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26.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집단공급, 충전가스용품 제조)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7. 가스업체(소),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28.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 냉동, 충전)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안전관리 30.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31.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32.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수리 33.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승인 34.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35. 석유 안전수급 계획 수립 36.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3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수리 38. 석유정량거래 지도단속 39. 유사휘발유 유통 및 경유 혼합방지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 검사 실시 40. 석유판매업소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무 분 장
청정산업복지과	41. 연탄 안정수급 계획수립 42. 연탄 품질검사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43. 기타 연료(가스, 석유, 연탄)사용의 안전 및 소비자불만 신고에 관한 사항 44. 공원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45. 공원조성 및 기타 복지 조성·관리 46. 가로수 및 화단관리 47. 국토공원화 사업시행 및 기술지도 48. 기타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49. 조림계획 수립시행 및 조림지 사후관리 50. 사방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51. 산림보호·통제에 관한 사항 52. 산림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 53. 제재소 지도단속 및 임산물 반출허가 54.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55.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56. 계량기에 관한 사항 57.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코디팀	1. 복지코디네이션 추진 2. 지역복지자원 발굴, 관리, 동원, 조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관리 3. 지역특수사업 개발,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4.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지원, 후원자 발굴 및 결연사업 관리 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조사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지원 6. 긴급복지지원사업 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8.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9. 사회복지관 운영·지도점검 및 지원 10. 음식물 나눔사업 운영 11.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수혜자연계, 프로그램 개발 12. 무료급식소 등 지원·관리
경제진흥팀	1.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택(콜)센터유치업무에 관한 사항 3. 재래시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시장관련 시책업무추진 및 구포시장 지원 나. 축산물도매시장 및 기타 시장(인정 및 등록시장) 전반 지원 다. 시장(대규모점포) 및 상인회 등록관리 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마.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바. 시장마켓팅 지원 사. 시장 상인대학 운영 아. 시장전시회 및 상품권 관련업무 추진 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차. 지역특화사업 추진 4. 공설시장 및 사설시장 인허가 지도감독 5.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도 육성 6. KS표시 공장 사후관리 및 공업단지 관리 7. 지역공업 자원육성 및 공업기술 지도 8. 공업행정 종합조정 및 공업 통계 9. 지역내 기업의 정보제공 및 자금수요 파악 10. 불법 공산품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업무 11.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도시국 소관]	
구 분	사 무 분 장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교통수요 관리(차량부제운행 관련 사항)·교통량 조사 3.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추진 총괄 및 교통관련 단체관리 4.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신규면허, 면허취소, 증차, 인가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 제외) 5. 시내버스정류소 및 노선조정 진달에 관한 사항 6. 수송 동원업무 및 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련 표시판 관리·이면도로 주정차선 등 협의 및 도색 8.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조정 9. 주차시설 개발 및 관리(노상, 노외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 10. 민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11.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12.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3. 운송주선사업(가맹사업)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매매·폐차업)허가 및 지도감독 16. 자동차정기검사 이행안내명령, 과태료 부과·체납 및 고발에 관한 사항 1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정류장(터미널)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 및 지도단속 21. 노선화물영업소, 취급소 설치인가 및 지도감독 22. 노상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에 관한 사항 24.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5. 자동차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26.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27.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과	1. 국·공유재산(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정비,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기 계약 및 관리 4. 도로굴착·복구 관련사항 5. 상수도 사고시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에 관한 사항 (단,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산하기관의 분장사무 제외) 6.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7. 국, 공유재산 도로 관리계획 수립 8. 도로 정용허가(갱신, 취소, 권리의무승계) 관련 사항 9. 도로 무단점유자 행정처분 10.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11. 행정재산(도로)의 기부채납 12. 행정재산(도로) 무상귀속 관련 사항 13. 사도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따른 사도 제외) 14. 도로순찰 및 파손 보수·차도 정비 15. 도로손괴자(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16. 노점상 단속 17. 노상적치물 정비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도 시 디자인과	18. 도로(소파수선) 공사 및 행정처분 19. 도로 관련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20. 옥외광고업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2. 옥외광고업 관리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23.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4. 공공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 2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6.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관련사항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7.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 28.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및 사후관리 29. 벽보신고처리 30.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3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2. 도시디자인 자치법규·행정규칙 관리 33.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도시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35. 도시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36. 도시조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37. 건축물 녹화사업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38. 디자인 진흥사업 연구, 개발 및 지원 39. 기타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관리과	2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25. 교량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26.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등 안전관리 지도 2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8.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29. 소관 업무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30. 가로등(육교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31. 터널(지하도) 조명설비 유지관리 32.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33. 전기 사용요금 정산 34. 전기안전용품 관리 및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35. 승강기 관련 사항 36.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7.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38.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 39. 풍수해보험 실시 40.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41.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 4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사항 44.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5. 1·2층 시설물 안전관리 46.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	1. 재해대책(기상관측 포함)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기획·평가 총괄 3.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 4.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중요시책 또는 기본 계획수립·시행 6. 민방위제도의 개발 및 개선 7. 민방위 상황실 운영 및 민방위 준비명령 8.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 10.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12. 등화, 음향관제 운영 13. 민방위대 조직·편성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대 동원, 자원파악, 주민의 통제, 소산 및 수송 15. 핵 및 화학생방에 관한 사항 16. 공익근무요원 복무등 총괄관리 17. 복구 재난종합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18.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체계 구축 19.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 계획수립 운영 20. 재난관리 책임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21. 재난관련 여론동향 및 정보수집·분석·전파 및 자료통계 관리의 전산화 22.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23. 각종 재난대비 교통훈련 실시	건설과	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2. 시설(토지, 건물, 건설업체) 동원 및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 3. 전문건설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구소관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수용 보상 5.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공공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7. 기타 각종 공사로 인한 보상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수립 시행 9. 개발제한구역 허가행위에 대한 기술감독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중 가. 행위허가, 승인 신청 사용검사(단, 건축물 허가신고는 제외) 나. 순찰 및 위법행위 단속·교육 11.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다. 준공검사 라. 비용부담 등 12.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 및 결정 나. 지적고시 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라. 사업실시 계획인가 마. 도시계획시설 사업협의 바. 관내 도시계획 사업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단, 행정청시행 도시계획사업은 제외) 사. 도시관리계획의 고시 및 공고

구 분	사 무 분 장	구 분	사 무 분 장
건 설 과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토지형질변경) 14.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기반시설 계획시행(생활기반, 환경위반 시설) 15.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무중 사업협의 등 1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7. 기타 지역개발, 도시계획,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18. 토목(도로, 교량등) 공사의 설계 및 감독준공 19.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설계 및 감독준공 20. 토목행정처분 2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 22. 가로의 정비 및 도로 유지관리(예산수반사업), 소파수선 (개소당 500만원이상)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의 1,2종 시설물에 관한 사항 24.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25.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6. 하수,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27. 건축허가 신청관련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검사 28.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시행 29. 하수관련사무 전반 30. 직할, 준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정용허가 31. 지방하천 연안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허가 32. 하천감시 및 부속물관리에 관한 사항 33. 측구 준설 및 준설토 처분에 관한 사항 34. 국유재산(건설부 소관중 하천, 구가)관리에 관한 사항 3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36. 유선 및 도선업에 관한 사항 37. 공공하수도(배수설비)설치 인·허가 3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39.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건 축 과	17.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18.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포함) 19.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20. 건축에 관한 계획, 조사, 통계 21. 건축위원회 운영 22.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주택, 건축 사업 관련) 23. 건축사 현장조사·검사와 확인대행업무 점검 24.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5 26. 주택관리업 신고 27. 주택관리사 신고 28.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0. 분양가상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
		토 지 정보 과	1.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2. 토지거래 규제업무에 관한 사항 3.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4.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관리 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열람 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0.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추진 및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11.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사항 12.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 13. 지적측량성과검사 14.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15.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16.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사항 17.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18. 지적 전산자료·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적도 작성에 관한 사항 20. 지적전산 운용에 관한 사항 21.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22.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 23. 지적통계에 관한 사항 24. 지적전산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5.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26.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27. 국가상대소유권 확인소송(미등기 주소등록에 한함) 28. 건축물대장 보존·신규작성 및 변동사항 정리 29. 증명발급 및 열람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0. 토지 및 건물 등기변동자료 전산정리 31. 건축물대장 전산 운용에 관한 사항 32.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33.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3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5. 부동산거래신고업무 3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7. 새주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9.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의 과징 40. 토지이용계획 변동정리에 관한 사항
건 축 과	1.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2.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행위허가(신고) 3. 주택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대한 자금관리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5.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6. 건축사 지도·감독 7. 조합 설립 인가(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8. 시설(건물, 부속토지)동원업무 관리 9. 건축물(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10.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처리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단, 개발행위, 도시관리계획 등 소관부서) 14. 공동주택 및 입주자모집승인에 관한 사항 15.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주택건립에 관한 행정지도와 민원 처리(단, 의제허가, 신고사항 등 소관부서) 16.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그 관련부서에서 처리)		

구 분	사 무 분 장	
주 차 관 리 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계획 수립</li> <li>2. 과태료 세입통계 분석</li> <li>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채납관리</li> <li>4.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배정)</li> <li>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li> <li>6. 주·정차위반과태료 인센티브 운영</li> <li>7.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채납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렌드카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오납 환부)</li> <li>8. 주차장특별회계 온라인 통장관리 및 현년도 통계(월보)</li> <li>9.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금정리</li> <li>10. 일시사역인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li> <li>11. 불법 주·정차단속 계획수립</li> <li>12.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처리(현장민원,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포함)</li> <li>13. 단속장비 관리 및 차량운영</li> <li>1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현장 및 무인카메라단속)</li> <li>15. 장기 미반환차량(견인차량) 폐차처리</li> </ol>	<p>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 3 5</p> <p style="text-align: center;">705</p> <p>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구 분청의 전결사항(제4조 관련)

[★는 기안자, ○는 전결 및 결재권자 표시임]

1. 공 통 사 항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 과 장	국 장 · 보 건 소 장	부 구 청 장	
1. 기 획	①중요시책 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②중요시책 또는 기본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				○	
	③소관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			○		
2. 예 산	①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		
	②예산편성 자료제출	★		○			
	③예산(재)배정 요구	★		○			
	④예산전용 요구	★			○		
	⑤소관별 시비, 국비, 보조금 및 교부금신청	★				○	
	⑥소관사업소의 예산배정 요구	★		○			
3. 위원회(협의회) 위해측 및 운영심의	①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외부인사		★				○
	②위원장이 부구청장	★				○	
	③위원장이 국장이하	★			○		
	④운영·심의사항 통보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과 장	국 장·보 건 소 장	부 구 청 장	
4. 법규정비 해석 및 고시 공고	①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건의	★	★				○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실시	★		○			
	③ 법제심사 의뢰	★		○			
	④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제출	★			○		
	⑤ 고시의 제·개정, 폐지 건의	★	★				○
	⑥ 고시·공고문 공고의뢰	★		○			
5. 복 무	① 연가, 병가, 휴가 및 관외출장 가. 국장급 이상 및 보건소장	★	★				○
	나. 실·과·팀장, 사업소장 및 동장	★				○	
	다. 보건소 과장·의사 및 덕천지소장	★			○		
	라. 6급 이하	★		○			
	② 조퇴, 외출, 특근, 관내출장명령 가. 부구청장	★	★				○
	나. 국·실장	★				○	
	다. 과·팀장	★			○		
	라. 담당	★		○			
	마. 7급 이하	★	○				
	6. 민원사무처리	① 3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			★		
② 20인-30인미만 다수인관련 민원				★		○	
③ 20인미만 다수인관련 민원			★		○		
④ 상급기관에 이첩되는 민원		★			○		
⑤ 정책결정 및 다수인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				○
⑥ 각실, 국에 관련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				○	
⑦ 소관 국내 2개과 이상 관련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			○		
⑧ 경미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		○			
⑨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건의서		★			○		
⑩ 부신을 요하는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진달		★			○		
⑪ 부신을 요하지 않은 청원, 진정서 또는 건의서 진달		★		○			
⑫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		○			
⑬ 신고로 종결되는 상황		○					
⑭ 불가·반려민원 사항 가. 담당자·담당전결 민원사무		★		○			
나. 과장전결 민원사무			★		○		
다. 실·국장전결 민원사무			★		○		
라. 부구청장전결 민원사무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7.자료 제출	①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		○			
	②청내 왕복문서중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	★			○		
	③청내 왕복문서중 일반적인 자료제출	★		○			
	④정기보고	★		○			
	⑤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					
	⑥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하는 문서 (1회보고 승인)	★		○			
	⑦행정사무감사, 조사 자료제출	★			○		
	⑧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구청장 답변자료 제외)	★			○		
	⑨구의회 제출요구 및 기타 각종자료 제출	★			○		
	8.각종공사	①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②공사의 설계변경							
가. 기본설계 변경(설계도서)		★			○		
※ 변경시행 품의는 당초시행 결재권자							
나. 기본설계 이외의 변경		★		○			
③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			
④시공감독원 지정		★		○			
⑤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		○			
⑥계획범위내의 물자 배정		★		○			
⑦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		★		○			
⑧도급공사의 중지, 해제 결정 및 공사착공 준공검사 기간의 연기결정		★			○		
※ 일시적 사안이 아닌 경우는 당초시행 결재권자							
⑨공사 하자 보수 명령		★			○		
⑩공사로 인한 공작물 소유권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 허가	★			○			
⑪공사현장 보고서	★			○			
⑫도급공사의 기성부분 준공검사	★		○				
⑬주요 건설공사 준공(기성)검사관 임명							
가. 5천만원 이상	★			○			
나. 5천만원 미만	★		○				
9.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①자원봉사자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				○	
	②자원봉사자 사기양양 및 활성화 방안	★			○		
	③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			
10.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교통영향평가서 송부	★		○			
	②교통영향평가 의견서 제출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1. 일반 서무	①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		○			
	②국·실·과간 사무처리 조정	★				○	
	③사무인계인수						
	가. 부구청장	★					○
	나. 국·실장	★					○
	다. 과장	★			○		
	④각종 행사						
	가.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 기본계획			★			○
	나. 구청장 참석		★				○
	다. 부구청장 참석	★				○	
	라. 국장 참석	★			○		
	마. 실·과장 참석	★		○			
	⑤소관업무에 대한 보건소, 동 지도감독	★			○		
	⑥관허업자(신고, 등록업자포함)요금, 가격 운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조정기준 결정		★				○
	⑦성금, 성품관리		★				○
⑧물품청구, 수입, 반납	★		○				
⑨소유금품 출납명령	★		○				
⑩계약심사 의뢰	★			○			
⑪차량배차 신청	★		○				
⑫시외전화 사용	★		○				
⑬수입인지·증지 소인	○		○				
⑭각종 일보 및 일지정리	★		○				
⑮일용인부 사역 결의	★		○				
12. 공익근무요원 관리	①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	★		○			
	②공익근무요원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		○			

2.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실 장	부 구 청 장	
1.구정의 기본계획	①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		○
2.구정소개·현황 책자 발간	①책자발간 계획수립 ②책자발간 및 배부	★	★	○		○
3.업무의 평가	① 평가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② 평가자료 요청 및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③ 평가결과 보고 ④ 평가결과 시달 및 보고서 발간 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점검 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4.구정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장기계획)	①종합계획 수립 ②자료수집 및 조사 ③연구, 용역 추진 ④평가조정 및 시행확정 ⑤자료발간 및 배부 ※ 중·단기계획은 장기계획에 준하여 처리	★ ★ ★ ★	★	○ ○ ○ ○	○	○
5.의회 운영	①지방의원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집회공고) ②임시회 소집요구 ③의안제출 ④의안의 처리결과 통보 ⑤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처리 가. 해당부서 이첩 나. 처리결과 의회 통보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⑥구정 주요정책 사항의 질의 답변 가. 구정 주요정책사항 질의 답변 나. 기타사항 질의답변 다. 질문서 해당부서 이송 ⑦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가. 행정사무감사·조사 수감계획 나. 행정사무감사·조사 수감결과 시정 및 처분요구사항 추진 상황 보고 ⑧기타 의회현황, 자료파악 제출 및 상급부서 각종 현황보고	★	★	○	○	○
6. 각종 지시사항 시달 및 분석	①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지시사항 가. 선결 나. 시달 다. 자료조사 및 요구 라. 진도 및 결과보고 마. 시정지시 ②구청장 지시사항 가. 지시사항 시달 나. 자료조사 및 요구(분석) 다. 진도 및 결과보고(분석) 라. 시정지시	★	★	★	★	★
7. 전시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전시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			○	
8. 국제화 업무 추진	①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②국제관련단체 운영지원	★	★	○		○
9. 공무원 국외 여행	①공무국외여행 심의 ②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③공무국외여행 시행 통보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10. 지도방문 및 출장 통제	① 지도방문 조정심의	★		○		
11.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① 자체혁신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
12. 지방분권·이양에 관한 사항	①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 ★	★ ○	○ ○	○	
13. 예산	① 예산편성 지침수립 ② 예산편성 지침시달 ③ 예산편성 자료제출 요구 ④ 예산심의 및 편성(수정등) ⑤ 예산편성 의회 제출 ⑥ 예산 제안보고 ⑦ 예산 승인신청 ⑧ 예산 확정고시 ⑨ 예산 확정통보 ⑩ 전시예산 편성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사용	① 사용 승인	★			○	
15. 예산 운용	① 예산의 전용, 이월, 이체 ②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비 승인요구 및 결정 ③ 전출금 관리 ④ 예산 편성결과 분석보고 ⑤ 예비비 사용(지출 및 집행승인 신청) ⑥ 예산절감 계획수립 ⑦ 예산절감 실적보고 ⑧ 실행예산 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16. 예산배정	①세출예산 배정 계획수립 ②세출예산 배정 및 재배정	★ ★		○ ○		
17.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①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신청 ②재원조정 교부금 산정자료 취합	★	★	○		○
18. 특별교부세	①특별교부세 신청 ②교부세 신청자료 제출	★	★	○		
19. 지방채에 관한 사항	①지방채 발행 ②지방채원리금 상환 ③지방채 현황보고 ④기채·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계획 및 승인신청	★ ★ ★	★	○ ○ ○		○
20. 중기투자재정 계획	①계획수립 ②자료조사 ③심의위원회 개최 ④종합수립 및 조정 ⑤계획서 제출 및 책자발간 배부	★ ★ ★ ★	★	○ ○ ○		○
21. 외화사용	①외화사용 계획서 제출 ②외화배정 및 한도 확인신청	★ ★		○ ○		
22. 투자사업	①투자심사 지침수립 ②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③사업 우선순위 결정	★ ★	★	○ ○		○
23. 예산 성과금	①예산 성과금 사업계획서 요구 및 결정통보 ②예산 성과금 심의 및 결정	★ ★		○ ○		
24. 기금관리	①기금운영 총괄 및 계획수립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실 장	부 구 청 장	
31.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①규제개혁심의회 운영 ②규제개혁 종합정비 계획수립 ③규제사무 정비상황 보고 ④기타 규제관련 일반사항	★ ★ ★ ★		○ ○	○ ○	
32. 사무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①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및 지도관리	★		○		
33. 전시 직제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전시 직제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	
34. 쟁송사건	①소장접수 및 응소여부 결정 ②제소·상소 결정 ③소송수행자(대리인) 지정·변경 ④자료수집 및 답변서(준비서면) ⑤판결 결과 보고 ⑥사건 종결 보고 ⑦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처리 ⑧고문 변호사 위촉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35. 자치법규 정비	①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정·폐지안 심사 ②조례·규칙 사전 보고 ③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④조례·규칙 공포	★ ★		○ ○	○ ○	○
36. 기타 법제일반	①법령질의 회신 ②자치법규집 편찬 간행 ③법제 자료수집 ④전시법령 정비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정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정 장	
37. 통계	① 통계연보 발간	★		○		
	②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		○		
	③ 인구 및 주택센서스	★		○		
	④ 경제활동인구조사	★		○		
	⑤ 광공업통계조사	★		○		
	⑥ 도·소매업통계조사	★		○		
	⑦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⑧ 주민소득추계조사	★		○		
	⑨ 자체 통계조사	★		○		
	⑩ 통계심사	★		○		
	⑪ 행정지도 제작	★		○		
38. 지역정보화 추진	①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			○
	② 연간 구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				○
	③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및 기획·조정·협의	★				○
	④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		
	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추진	★		○		
	⑥ 유-시티 관련업무 도입·운영	★		○		
39.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① 정보통신보안 추진계획 수립	★				○
	② 정보통신보안 교육	★		○		
	③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		○		
	④ 정보통신보안 심사분석	★		○		
	⑤ PC 바이러스 예방관리	★		○		
	⑥ 주요전산자료 관리 및 소산	★		○		
	⑦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				○
	⑧ 정보통신보안시스템 도입·운영	★				○
	⑨ 개인정보화일 및 정보유출 예방관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40.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①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② 자료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③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④ 주민등록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⑤ 공통기반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⑥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		
	⑦ 웹메일 및 메일링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⑧ 새울행정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⑨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⑩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	★		○		
	⑪ 인사행정정보(인사량)시스템 관리	★		○		
	⑫ 지방재정정보(e-호조)시스템 관리	★		○		
	⑬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	★		○		
	⑭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 관리	★		○		
	⑮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 관리	★		○		
	⑯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관리	★		○		
	⑰ 한국토지정보(KLIS)시스템 관리	★		○		
41. 정보화 교육	①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	
	② 구민정보화 교육	★		○		
	③ 직원정보화 교육	★		○		
	④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			○	
42. 행정정보화 추진	① 정보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			○	
	② 정보화업무 지도·감독	★		○		
	③ 타부서 정보화 추진 및 외주도입 협의	★		○		
	④ 행정업무 정보화추진 및 용역개발에 관한 사항	★			○	
	⑤ 정보화업무 표준화 및 법규 관리	★		○		
	⑥ S/W 등록·보급 및 협의조정시스템 운영	★		○		
	⑦ 행정전자서명 보급 및 운영	★		○		
	⑧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		○		
	⑨ 시도행정포털 및 지식관리시스템 관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정장
		담당자	담당	실장	과장/정장	
43.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계획 수립 ② 부산정보고속도로(데이터) 및 사업소망 관리 운영 ③ 구내 정보통신망(LAN) 구성 및 회선관리 ④ 인터넷 외부망 구축 운영 ⑤ 네트워크 장비도입 검토 및 운영 ⑥ 침입탐지, 암호화장비 등 보안시스템 관리 운영 ⑦ 인터넷주소(IP) 부여 및 할당 관리 ⑧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⑨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체계 도입 및 계획 수립	★			○	
44.지역정보화 본부 운영	① 주전산기 운영 및 관리 ② 주전산기 사용일지 및 시스템 백업 관리 ③ 전산실 출입자 통제 ④ 지역정보화본부 구축 운영 ⑤ 정보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		○		
45.자체감사 실시 (부분,종합,특별,민원)	①감사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②감사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③감사결과 처분지시(보고)	★	★		○	
46.상부기관 감사수감 (감시원,행자부,총리실,시감사등)	①수감 및 지원계획 ②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 ③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보고 및 처리 ④감사결과 집행전말 결과보고	★	★		○	
47.조사 및 감찰	①조사 감찰계획 및 처분 가. 중요사항(특명,하명 등) 나. 일반적인 사항 다. 경미한 사항			★		○
48.공무원 경고 및 훈계 처분	①5급이상 공무원 ②6급이하 공무원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49.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①5급이상 징계 ②6급이하 징계	★	★		○	○
50. 소청사건 및 재심사 청구	①소청사건 및 심사(재심사)청구 ②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	○		○
51.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①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②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이송 ③재산등록 서류 열람·복사 허가 ④재산등록 및 변경신고 연장 허가 ⑤재산등록심사 자료 제출 요구 ⑥재산등록심사 결과보고	★	★	○		○
52.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①관용심사 요구 ②관용심사 대상자 심사결정	★	★	○		○
53. 사정업무 추진	①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 ②사정활동 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③비위자 조치사항 보고(월보)	★	★	○		○
54. 공무원 비위발생 조사 처리	①6급이상 ②7급이하	★	★	○		○
55. 언론 보도사항 조사 처리	①중요사항 ②경미한 사항	★	★	○		○
56. 민원 처리상황 검열	①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계획 수립 ②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결과보고 ③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분석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 ④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통제 ⑤불허 및 반려민원 통제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57.청렴도 측정	①청렴도 측정 계획수립 ②청렴도 등급조정 및 관리	★ ★		○ ○		
58.공무원 범죄통보 접수처리	①중한 범죄사실(징계이상 해당) ②경미한 범죄사실(경고, 훈계 해당) ③자체 종결처리(주의, 촉구 등)	★ ★	★ ○	○ ○	○	
59.계산증명 검사	①감사원 제출용 세입세출계산서 검사 ②세입세출계산서에 대한 사실조회 보고 ③증빙서류 검사 및 결과보고	★ ★ ★		○ ○ ○		
60.물품망실, 훼손 사고에 대한조사	①1,000만원이상 사고 ②1,000만원미만 사고	★ ★	○		○	
61.감사원등 상급 기관 대행감사	①대행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			○
62.일상 감사	①일상감사 실시계획 ②일상감사 대상사업 선정 ③일상감사 결과 처분	★ ★ ★		○ ○ ○		
63.구정 환경순찰	①순찰계획 수립 및 평가 ②시 이첩 지적사항 처리 및 결과보고	★ ★	○ ○			

3. 행정 지원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전직, 강임 등 방침 결정	전직, 강임 등 방침 결정			★			○
2.공무원 임용	①일반직 6급이상 및 별정직 6급상당이상 공무원 임용		★				○
	②6급이상 공무원 전출입 동의		★				○
	③전문직(계약직)공무원 채용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 공무원 임용	④7급이하 공무원 임용	★				○	
	가. 일반직 및 별정직	★				○	
	나. 기능직	★			○	○	
	⑤7급이하 공무원 전출입 동의	★				○	
	⑥대우공무원 임용	★			○		
	⑦회계직공무원 임용	★			○		
	⑧청원경찰 임용	★			○		
	⑨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요구			★			○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5급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②6급이하 일반직 명부작성		★				○	
③기능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		
4. 근무성적 평정	①5급 근무성적 평정확인	★					○
	②6,7급이하 근무성적 평정확인	★				○	
	③8급이하 근무성적 평정확인(단, 실 및 의회는 부구청장)	★			○		
5. 정기승급 및 인사통계	①호봉승급	★			○		
	②공무원 통계보고	★		○			
6. 공무원 등 연금, 노사 및 직장협의회 협의	①공무원 연금관계 확인	★		○			
	②공무원 연금카드 송부 및 의뢰	★		○			
	③공무원 요양승인 신청	★		○			
	④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		○			
	⑤순직, 공상자 보상(직원, 일용직)	★			○		
	⑥퇴직금 지급	★		○			
	⑦공무원단체와의 협의·단체교섭		★				○
7. 공무원 교육	①공무원 교육 훈련 기본계획	★					○
	②직장교육	★			○		
	③공무원 교육 차출						
	가. 5급 이상	★				○	
나. 6급 이하	★			○			
④교육훈련 경비 지출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8.복무에 관한 사항	①당직사령 명령	★			○		
	②당직(반장, 직원) 명령	★			○		
	③복무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		
	④공무원 시간외 근무명령 및 확인	★				○	
9.의료보험 관리	①피보험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			
	②정부부담 보험료 불입	★		○			
10.직원고충처리	①신상상담에 대한 결과회시	★			○		
11.직원복지	①공무원 대부계획 시달	★			○		
	②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			
	③기타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		○			
12.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①정부포상 및 장관이상의 표창 추천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	★			○	○
	②구청장 표창 기본 방침	★	★				○
13.명예 및 조기퇴직 대상심의요구	①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
14.보안관리	①보안세부시행계획 수립	★				○	
	②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				○	
	③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 현황보고	★				○	
	④비문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	
	⑤비밀취급인가	★		○			
	⑥공무원 신분증 발급	★		○			
	⑦신원조사 의뢰 및 회보	★		○			
	⑧음어자재 수령 및 배포	★			○		
	⑨총무계획 수립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령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5. 예비군 운영	①작전계획 수립	★				○	
	②교육훈련 계획 수립	★				○	
	③교육훈련 실시	★				○	
	④무기탄약 관리	★				○	
	⑤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 발급	★		○			
16. 직장민방위	①민방위대원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	
	②민방위대원 신고서 처리	★		○			
	③민방위대원 동원 계획	★				○	
	④민방위대원 편성	★				○	
17. 직장 방호	①방호계획 수립	★				○	
	②평시 방호	★				○	
	③비상시 방호	★				○	
	④방호 시설물 설치	★				○	
18. 행사 및 의전	①시장급 이상 순방 및 주요귀빈 관련 행사			★			○
	②30인이상 주민과의 초청간담회 및 행사						
	가.기본계획		★				○
	나.세부시행계획	★				○	
	다.그외 주민관련 행사계획	★			○		
	③관내외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급 회의 및 행사			★			○
	④외국인과의 행사						
	가.외국국민외교관, 단체장 영접				★		○
나.외국 부단체장급이하 인사영접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9.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 투표 사항	①선거관계 질의 조회	★		○			
	②선거법 및 주민투표조례에 관한 공고		★				○
	③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				○
	④선거인명부 및 주민투표인명부 확정 상황보고		★				○
	⑤투표구 확정		★				○
	⑥선거사무 기본계획		★			○	
	⑦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지원		★			○	
	⑧선거사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			○		
	⑨인구수 공표	★		○			
	⑩주민투표청구주민수 공표(통보)	★			○		
	⑪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의 임명 및 통보	★				○	
	⑫선거인명부(부재자)날인 인장의 인명신고	★			○		
	⑬선거사무 지도 및 홍보	★		○			
	⑭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		○			
	⑮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 송부	★		○			
	⑯선거인명부 열람·공람	★		○			
	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통지	★		○			
	⑱부재자신고 오기등 발견사실 통보	★		○			
	⑲선거인명부작성 임회인 신고접수 임회인 교체접수	★		○			
	⑳선거인명부 송부 및 열람(공람)장소, 기간공고, 비용공시	★		○			
	㉑후보자연설회 개최 지원	★		○			
	㉒선거인명부(부재자)사본 신청접수 교부, 부재자 신고접수	★		○			
	㉓주민투표관련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				○
	㉔주민투표관련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교부	★		○			
	㉕주민투표청구사항 공표		★				○
	㉖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공람	★		○			
	㉗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 심사, 결정	★				○	
	㉘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보정사항 통보	★		○			
	㉙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운영)	★				○	
	㉚주민투표일 공표		★				○
	㉛주민투표관련 재투표 및 투표연기 공고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0. 동행정 지도 감독	① 동행정평가	★				○	
	② 평가결과 분석	★			○		
21. 동향보고	① 동향보고 및 지휘보고	★					○
22.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① 행정서비스현장 제·개정	★					○
	② 고객만족도 조사	★			○		
	③ 이행달성도 평가	★					○
23. 시·구·동정 설명회	① 기본계획수립 및 초청대상자 선정	★					○
	② 주요추진사업파악 및 건의·현안사항 조치	★					○
24. 주민자치모임	① 주민자치모임개최 계획수립	★				○	
	② 건의사항 처리	★		○			
25. 여론대화행정	① 여론행정 종합조정	★				○	
	② 사이버 여론모니터 관리 운영	★		○			
	③ 여론 제보사항 처리	★		○			
26. 행정구역	① 행정구역 변경	★					○
	②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일반사항	★		○			
	③ 통반조정승인	★				○	
27. 회의심사에 관한 사항	① 회의심사						
	가. 동장회의	★			○		
	나. 실무자회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정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8. 주민등록관리	①주민등록 상황보고(발급, 통계)	★		○			
	②질의, 조회	★		○			
	③용지 수불	★		○			
	④사무지도 및 감독 계획	★		○			
	⑤자재관리	★		○			
	⑥주민등록번호 부여	★		○			
	⑦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운영	★		○			
29.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				○	
	②주민자치센터 지도	★			○		
	③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30. 적령아동 취학	①적령아동 조사계획 시달	★		○			
	②조사결과 통보	★		○			
31. 적십자 회비 모금지원	①적십자 회비모금 업무 지원	★			○		
32. 구정종합일지에 관한 사항	①구정 전반에 관한 일일추진상황 기록 관리	★		○			
3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①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및 지도확인	★		○			
34. 구민제안제도	①계획수립	★				○	
	②자료수집 수시통보	★		○			
	③심의결과 보고		★				○
35. 공무원 제안제도	①제안모집 지침 계획시달	★				○	
	②관계기관 의견조회	★		○			
	③제안심사 결과 보고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6. 국가기반 체계보호	①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
	②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				○	
	③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수립·집행	★					○
	④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				○	
	⑤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 구성·운영	★					○
	⑥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 명령	★			○		
	⑦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			○		
	⑧위험지구 설정	★					○
	⑨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동행제한응급 부담 등	★					○
37. 새마을운동 지원	①새마을단체 행사지원(구단위 주요행사)	★					○
	②새마을단체 행사지원(구단위 경미한행사)	★		○			
	③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지급	★		○			
	④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교부	★		○			
38. 시민 운동육성 지원	①시민운동 계획 수립	★				○	
	②시민운동 추진 및 시행	★		○			
39. 새마을금고관리	①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취소	★			○		
	②정관변경 인가	★		○			
	③금고에 대한 감독권	★		○			
	④금고에 대한 명령권	★		○			
	⑤새마을금고 설립인가취소에 관한 청문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①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	
	②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	
	③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			
	④사회단체보조금 사업지도 감독	★			○		
41. 도시 기초환경정비	①도시기초 환경정비 계획수립	★				○	
	②노변정비 및 꽃길·화단 조성	★			○		
	③공간유휴지 녹화사업 추진	★				○	
	④정비실적 보고	★		○			
	⑤환경불결지 정비 지시	★			○		
42.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			
43.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4. 통합방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5. 화랑, 충무 및 지상협동훈련	화랑, 충무 및 지상협동 훈련	★			○		
46. 평생학습 정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평가	★					○
	②정책개발 및 입안	★					○
	③주민욕구조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7. 교육경비지원조례 등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교육경비·학교급식 등 교육행정 지원 사무	★				○	
48. 평생학습 홍보	① 홈페이지 개발 운영 관리	★			○		
	② 소식지 발간	★		○			
	③ 추진성과집 제작	★			○		
	④ 각종 홍보물 제작	★		○			
49.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발전 자원협의회 운영	①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
	② 교육발전자원협의회 운영	★				○	
50.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				○	
	② 평생학습 광장 운영	★		○			
51. 평생학습 기관 단체간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① 국외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	★			○		
	② 관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		○			
52.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특화사업 추진	① 우수 특화프로그램 개발	★			○		
	② 관내 기관 프로그램지원 사업	★			○		
	③ 주민 및 단체 교육사업	★		○			
	④ 각종 프로그램운영	★		○			
53. 평생학습도시 축제에 관한 사항	① 평생학습 축제운영	★					○
	②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			○		
54. 평생학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	★				○	
	② 학습동아리 관리 운영	★		○			
	③ 학습동아리 연수 및 시상 격려	★			○		
55. 소관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① 세외수입 고지·자납 징수결정	★		○			
	②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및 정리	★		○			
	③ 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	★		○			
5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무 중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①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무 중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			
57. 특별사법경찰관리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신청	★		○			
	②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처리실적 분기보고	★		○			

4. 문화체육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지방문화행정 종합 계획 및 조정	지방문화행정 종합 계획 및 조정		★				○
2. 지방예술문화진흥	①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				○
	②예술진흥 세부추진계획 수립	★		○			
	③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④예술진흥 지도	★		○			
3구지구사 향토지 편찬	①편찬계획 수립		★				○
	②편찬위원회 위원 위·해촉	★				○	
	③편찬위원회 운영	★		○			
	④편찬집필위원 선정	★		○			
	⑤편찬자료 수집	★		○			
	⑥편찬안 확정	★		○			
4. 공공도서관 관리	①공공도서관 조성계획 수립		★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예산편성 및 집행 품의	★		○			
	다. 법적규제 및 행정규제등 제반사항처리	★		○			
	②공공도서관 육성지원	★		○			
	③공공도서관 지도감독	★			○		
④사립공공도서관(문고) 등록 및 변경등록	★		○				
⑤사립공공도서관(문고) 폐관	○						
5. 문화시설 공간조성 관리	①문화시설 공간조성		★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예산편성 및 집행품의	★		○			
	다. 법적규제 및 행정규제등 제반사항 처리	★		○			
②문화재 육성 및 지원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6. 문화원 지도 육성	①문화원 육성계획 수립 ②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	○		
7. 문화재에 관한 사항	①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 ②문화재 매매업허가. 검사 ③문화재 매매업소 장소이전 허가 ④문화재 매매업소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⑤유·무형문화재 관리 ⑥지정문화재 예치금 사용승인 ⑦시 지정문화재의 촬영 탁본허가 및 현상 변경허가 ⑧과태료 부과 징수	★ ★ ★ ★ ★ ★ ★ ★		○ ○ ○ ○ ○ ○ ○	○		
8.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	①문화축제행사 기본계획 ②향토문화 발굴 육성 ③문화예술사업, 지도단체 육성	★ ★	★	○	○		○
9.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①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변경 신고 ②행정처분 ③출판사, 인쇄사 지도 감독 ④신고증 재교부 ⑤폐업 신고 ⑥간행물 납본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0. 관광진흥	①관광진흥행정종합계획 수립		★				○
	②관광사업(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			
	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			
	다.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		○			
	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			
	마. 청문실시	★		○			
	바. 등록증 재교부	○					
	사. 휴업(폐업)통보서	★	○				
	③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정 및 지정변경	★		○				
나. 지정증 재발급	○						
11. 정부 및 사 구정 시책 홍보	①홍보계획 수립		★		○		
	②구 홍보위원 위·해촉		★			○	
	③홍보요원 교육	★			○		
	④구정홍보관 설치 관리	★		○			
	⑤각종 홍보물(간행물) 수령 배부	★	○				
12. 신문, 방송, 모니터 운영	①신문, 방송,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 및 스크랩	★	○				
	②신문구독 계획	★		○			
13. 보도사항 분석	①신문·방송 보도사항 분석	★				○	
14. 구보(공보)발간	①구보발간		★				○
	②공보 발간	★		○			
	③편집위원 위촉		★				○
	④명예기자 위촉	★		○			
	⑤편집계획 수립	★				○	
	⑥편집위원회 운영	★				○	
	⑦인쇄 및 배포	★		○			
	⑧투고료 지급	★		○			
	⑨광고계약 및 광고료 부과징수	★		○			
15. 기자실 운영	기자실 운영	★		○			
16. 사이버기자 신고 접수	사이버기자 신고 접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7. 전시 규정홍보물, 선전물 제작 운영	전시 규정홍보물, 선전물 제작 운영			★	○		
18. 점자 소식지 발간	①점자소식지 편집 발행 ②점자소식지 점역 의뢰 ③점자소식지 우송	★ ★ ○		○ ○			
19.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20. 행사 사진촬영 및 화보 제작	행사 사진촬영 및 화보 제작	★		○			
21.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	①노래연습장업 등록 ②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 변경등록 ③노래연습장업 지도 감독 ④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⑤등록증 재교부 ⑥과징금 부과 징수	★ ★ ★ ★ ○ ★	○	○ ○ ○ ○			
22.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①일반게임제공업 허가 ②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③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④게임관련업 등록사항 변경 ⑤등록 및 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⑥ 게임 관련업자 지도감독 ⑦게임 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폐업 ⑧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3. 공연 사무에 관한 사항	① 공연장 등 지도 감독 ② 공연장 등록 변경 등록 ③ 폐쇄조치 및 행정처분 ④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⑤ 과태료 부과 징수 ⑥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 ★ ○ ★ ○		○ ○ ○ ○			
24.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	①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② 영화상영관의 지도감독 ③ 영화상영관의 등록증 재교부, 폐업 ④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⑤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⑦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 ○ ★ ★ ○ ○		○ ○ ○ ○			
25.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 ②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지도 감독 ③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재교부, 폐업 ④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⑤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26.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① <b>체육시설업 신규 및 변경신고 수리</b> ② 체육시설업 청문 및 행정처분 ③ 시정명령 ④ 과태료 과징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 ★ ★		○ ○ ○ ○			
27. 동네체육시설	① 동네체육시설 설치 ② 동네체육시설 관리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8. 구민운동장 관리	①종합관리계획 수립	★			○		
	②잔디구장 프로축구단 등 장기사용 허가	★			○		
	③잔디구장 등 1일 사용 허가	★	○				
	④시설보수	★		○			
	⑤관리일지	★	○				
29.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획수립	①생활체육 교실운영 종합계획	★			○		
	②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급	★		○			
30. 각종 체육대회	①개최 및 지원계획수립		★				○
	②준비사항 추진	★		○			
31. 구 육성선수 관리	①운영계획 수립	★				○	
	②선수선발 및 교체	★				○	
	③전지훈련비 및 지원	★		○			
	④각종 육성선수 보상금 지급	★		○			
32. 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출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출	★		○			
33. 구체육회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34. 잡지외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①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신고	★		○			
	②행정처분 및 직권말소	★		○			
	③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④폐업신고	○					

5. 재 무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공사	①설계변경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			
	②공사기간 연기 결정명령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			
	③공사보상금 지급 결정						
	가. 원인행위액 1억원 초과	★			○		
	나. 원인행위액 1억원 이하	★		○			
	④관급자재 조달신청 및 지출	★		○			
	⑤착공 및 준공(납품서)처리	★		○			
	⑥입찰등록 접수	★		○			
2.부정당업자 제재	①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제재 결정	★		○			
	나. 제재사항 통보	★		○			
3.공사,용역,물품등 실적 증명 발급	①계약실적 대조확인 및 증명발급	○					
4.계약실적 보고	①계약실적 취합·보고	★		○			
5.예정가격 작성	①공사 입찰 예정가격 작성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			
	②용역, 제조, 물품매입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 5,000만원 초과	★			○		
	나.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6.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가압류등 처리	①관할 법원 공탁 처리 등	★		○			
7. 예정금액 작성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용역 의뢰	예정금액 작성에 필요한 물가 조사 및 용역 의뢰	★		○			
8.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①예금예탁, 보관 ②출납결의	★ ★	○ ○				
9.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구성 ②위원회 운영	★ ★			○		○
10. 결산사무	①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보고) ②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 및 고시 ③재정연감 작성	★ ★ ★			○ ○		○
11. 경리에 관한 사항	①원천징수 ②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출	★ ★	○ ○				
12. 물품관리	①물품수급 관리계획 ②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③정기·수시 재물조사(보고) ④손망실 처리(보고) ⑤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 ★ ★ ★ ★			○ ○ ○ ○ ○		
13.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① 주요업무계획 수립 ② 복식부기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가.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③ 자산·부채 재평가 및 재무제표 등록 ④ 회계처리(분개)확인 및 승인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4. 관용차량관리	①관용차량 운영계획 수립	★			○		
	②관용차량의 정수 배정	★			○		
	③2차 관리부서 지정	★		○			
	④관용차량의 배차 및 대장정리	○					
	⑤관용차량 처분	★			○		
15. 국유잡종 재산관리	①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	
	②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		
	③국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	★			○		
	④국유재산 세입징수 보고		★			○	
	⑤국유재산 대부						
	가. 대부결정	★			○		
	나. 대부액 사정가격 결정	★		○			
	다. 대부료 감액결정	★			○		
	라. 대부계약 및 해약결정	★		○			
	⑥국유재산 처분						
	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결정	★			○		
	나. 매매예정가격 결정	★			○		
	다. 재산의 시사감정의뢰	★		○			
	라.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			
	마.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6. 국유잡종 재산관리	⑦국유재산 관리환 합의	★			○		
	⑧국유재산 관리환 결정	★			○		
	⑨무주 부동산 공고	★		○			
	⑩사용료, 변상금 및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변상금 부과	★			○		
	나. 대부금 및 변상금 조정	★			○		
	다.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납부독촉	★		○			
	라. 등기(등록) 및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		○			
	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		○			
	바. 제대장 및 증서기록 보존	○					
	⑪소송사무						
	가. 국유재산 관련 소송행정사무 일반사항	★			○		
	나. 소송수행 상황보고	★		○			
17. 구(공)유 재산관리	①재산관리 계획수립		★				○
	②재산관리자 지명 및 관리전환	★			○		
	③재산의 취득·기부체납, 교환		★				○
	④지방청사 정비 대여대상 결정 및 대여금 신청	★				○	
	⑤공유재산 심의회(조정위원회)운영	★				○	
	⑥공유재산 증감 및 가격개정	★			○		
	⑦공유재산의 매각						
	가. 처분결정(구유)						
	◦중요재산(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				○
	◦기타재산(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			○		
	나. 처분결정(시유)						
	◦200㎡이하	★			○		
	다. 예정가격 결정	★			○		
라. 시가 감정의뢰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기 관 장	
18. 구(공)유 재산관리	마.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 해지	★		○			
	바.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		○			
	⑧공유재산의 대부(행정재산 포함)						
	가. 대부결정(사용허가)	★			○		
	나. 대부료 사정가격 결정	★		○			
	다. 대부료 감액 결정(50만원 이상)	★			○		
	라. 대부계약 및 해약결정	★		○			
	⑨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사항						
	가. 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납부 독촉	★		○			
	나. 변상금 부과	★			○		
	다. 대부 및 변상금 조정	★			○		
	⑩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소유권 말소등기 신청	★		○			
	나. 취득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			
	다. 공부 누락재산 및 무주부동산 처리	★			○		
	라. 분할 및 지목변경	★		○			
	마. 관리카드 정비 및 관리	○					
	⑪재산의 실태조사	★				○	
⑫부가가치세 신고업무	★				○		
19. 청사관리	①청사 신증축 시행		★				○
	②청사수선(영선공사) 사무	★		○			
	③집기대여	★		○			
	④사무실 배치	★			○		
20. 청사내외 부설 주차장 관리	①주차장 수입 세입징수 결정	★		○			
	②주차장 일일결산서 및 제대장	○					
21.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수립 및 조정	①기본계획 수립	★			○		
	②세부실천계획 수립	★			○		
	③구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 관리운영 총괄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2.통신보안 관리	①통신보안 활동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			
	②통신보안 교육 및 지도 점검	★		○			
23.정보통신설비 심의 및 사용전 검사	①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접수 및 현장 검사	★		○			
	②검사필증 교부	★		○			
	③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			
	④검사기록대장 및 장비관리	★	○				
	⑤사용전검사 현황보고	★		○			
	⑥연간업무계획 수립	★			○		

6. 세 무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세무행정의 종합추진 계획 수립	①세무행정의 종합추진계획 수립			★			○
	②세무공무원 교육	★		○			
	③민간에 대한 납세유공 표창		★				○
	④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	★		○			
	⑤지방세 전산화	★	○				
2.시가표준액조사·결정	①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			
	②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③주민의견 접수 및 심의	★		○			
	④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	★		○			
	⑤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⑥건축물·선박·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사, 승인 신청 및 결정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세원조사	①세원개발 및 세무조사 계획수립		★		○		
	②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		○			
	③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		○			
	④탈세정보 및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		○			
4.각종 세무조사 결과 처리	①세무조사 결과통지	★		○			
	②세무조사 결과보고	★		○			
	③세원개발 포상금 신청	★		○			
5.세표작성	①각종 세표정리 및 보고	★		○			
6.시세 및 구세 부과·징수	①과세자료 수집, 접수처리 및 통보	○					
	②각종 과세대장 정리	○					
	③시세 및 구세 부과조정 징수감액 결정	★			○		
	④시세 및 구세 직납조정 징수결정	★		○			
	⑤시세 및 구세징수 결정 통지	★		○			
	⑥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및 공시송달	★		○			
	⑦재해감면 조사 및 결정(보고)	★		○			
	⑧시세 및 구세관계 질의 조회	★		○			
	⑨과세 및 비과세조사 및 결정	★		○			
	⑩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		○			
	⑪현년도 가산금 및 증가산금 조정결의	★		○			
	⑫부동산 및 차량압류(현년도)	★		○			
	⑬시세 및 구세 결손 처분(현년도)	★		○			
	⑭압류재산의 공매처분(현·과년도)	★		○			
	⑮체납자 형사고발(현년도)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7.세무민원 처리	①시세 이의신청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진달	★		○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			○	
	③구세 이의신청		★		○		
	④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	★		○			
	⑤시세 및 구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			○		
	⑥시세 및 구세 감면신청	★		○			
	⑦농업소득세 필요경비 신고처리	★		○			
	⑧납세의무 승계신고 처리	★		○			
	⑨시세 및 구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					
	⑩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처리	★	○				
	⑪소송관련 사무	★		○			
	⑫토지장정등급확인원 발급	○					
8.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 사무	①수입일보	★	○				
	②시세 및 구세 징수종합실적 평가	★			○		
	③세입징수 결정액 통지정리	★		○			
	④시세 및 구세 수납상황 정리	★	○				
	⑤세입금 정정(세입년도 및 과목정리)	★	○				
9.지방세·국세 통계 및 결산	①징수속보	★		○			
	②지방세 세입징수보고(월보)	★			○		
	③국세세입징수보고(월보)		★		○		
	④지방세·국세 세입분기보고 및 결산보고		★				○
10.지방세 소인 및 영수필통지서관리, 과오납 환부	①지방세 소인	○					
	②영수필통지서 보관관리	○					
	③세입장표(징수부, 수납부)관리	○					
	④과오납 세입금의 총당환부 결정	★		○			
	⑤지연 변상금 처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1. 자금관리	①자금수급계획	★			○		
	②자금배정	★		○			
	③동일 회계연도 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호전용	★				○	
	④자금의 일시차입	★				○	
	⑤자금의 일시운용 및 관리	★		○			
12. 세입평가분석	①시세 및 구세 징수계획	★			○		
	②시세, 구세 세입목표 책정 및 조정		★				○
13. 세외수입	①세외수입에 관한 계획수립 및 목표액 책정		★			○	
	②세외수입 고지·자납 징수결정 (분임징수관 세외수입분 제외)	★		○			
	③세외수입 분임 징수부서 지도·점검	★		○			
	④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		○			
	⑤세외수입 세입징수 분석평가	★			○		
	⑥세외수입 관계 질의조회	★		○			
	⑦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및 정리	★		○			
	⑧총괄 채권관리	★			○		
	⑨세외수입 수입일계전 작성관리	★	○				
	⑩세외수입의 통계 및 결산(총괄)	★		○			
	⑪세외수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14. 구 금고 지정 및 감독	①구 금고 지정(변경)		★				○
	②구 금고 감독		★	○			

7. 민원봉사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민원행정일반	①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 수립 ②민원사무편람 발간 및 정비 ③민원실 환경개선	★	★			○ ○	○
2. 민원사무처리	①불가·반려 민원처리 분석 ②민원설문조사 ③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④민원사무처리부 정리 ⑤즉결민원 처리	★ ○ ○	★  ★		○ ○ ○		
3. 고객만족행정	①기본계획 수립 ②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추진 ③고객만족도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 ★ ★		○		○	○
4. 친절운동 추진	①기본계획 수립 ②친절시책 추진 ③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 ★ ★	★	○		○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②업무권한 승인 및 단말기 승인	★ ○		○			
6. 전자민원 G4C 관리	①전자민원G4C 즉결민원 처리 ②전자민원G4C 수수료 결산	○ ○					
7.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①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②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 ③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일결산	★ ○	★	○			○
8. 전자민원 창구 운영	①전자민원에 관한 일반사항 ②전자민원 접수 및 분류 ③전자민원 재분류 가. 1개局 관련 전자민원 나. 2개局 이상 전자민원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9.인감	①인감증명에 관한 일반사항 ②인감증명 처리 지도·확인 ③외국인 인감 신고·말소·송부 ④인감관련서식 수불부 대장관리 ⑤인감증명발급대장 일일결산	★ ★ ○ ★ ★		○ ○ ○ ○ ○			
10.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①민원후견인제 종합계획 수립 ②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③민원후견인 지정 및 수행복명서 처리 ④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부 관리 ⑤1회방문민원처리(예고)독려전	★ ○ ★ ○	★		○ ○		
11.제증명 및 어디서나 민원	①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일반사항 ②어디서나민원 접수·처리·교부 ③수수료 정산처리	★ ○ ○		○			
12.생활민원 접수안내	①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②생활민원 처리 결과 통보(처리과)	○ ★		○			
13.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①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에 관한 일반사항 ②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 발급	★ ○		○			
14.민원서류 접수 심사	①민원서류 접수·배부·심사 ②민원서류 재분류 가. 1개局 관련 민원 나. 2개局 이상 민원 ③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④민원상담	○ ○ ★ ★	★ ★		○ ○		○ ○
15.고객안내 도우미 관리	①고객안내도우미 근무일지 관리	★	○				
16.외국인관리	①외국인에 관한 일반사항 ②체류지변경신고 및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7. 기록관 운영	①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				○
	②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		★				○
18. 기록물 관리	①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
	② 기록물 정리 및 이관	★			○		
	③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		
	④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		○			
	⑤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작성 및 보고	★		○			
	⑥ 기록물 폐기	★		○			
	⑦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			○		
	⑧ 서고관리 및 정수점검	★		○			
	⑨ 기록물 열람 및 대출 관리	○					
	⑩ 보유기록물 통계관리	★		○			
	⑪ 기록관시스템 운영	★		○			
	⑫ 중요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및 관리	★			○		
	⑬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				○	
	⑭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					○
19. 사무관리규정	① 사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			
	② 공문서 수신자 기호 조정	★		○			
20. 구정자료실 운영	① 구정자료실 관리	★		○			
	② 구정자료 대출, 회수	○					
	③ 구정자료 구입, 수집	★		○			
21.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규칙 제정		★				○
	②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③ 정보공개사무편람 작성	★				○	
	④ 정보공개운영 처리	★		○			
	⑤ 정보공개 접수·배부	○					
22. 문서처리	① 문서수발	○					
	② 대외문서 접수·배부	★		○			
	③ 문서심사	○					
23. 공인관리	① 공인 등록 및 폐기	★			○		
	② 공인 관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4.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	①범죄자, 파산자 대장관리	○					
	②무적증명	★	○				
	③가족관계등록신고 해태이유서	★		○			
	④부재신고 등의 신고	○					
	⑤신원조회	○					
	⑥인구동태보고	★		○			
	⑦가족관계등록사무 건수표(월보)	★		○			
	⑧가족관계등록 정정(허가) 신청	★	○				
	⑨간이 직권정정	★	○				
	⑩기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신고	○					
	⑪신원조회 회보대장	★	○				
	⑫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	○				
	⑬계기사용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	○				
	⑭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일일전표	★	○				
	⑮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대장	★	○				
	⑯신원증명사항 조회(회보)대장	★	○				
25. 여권업무 추진 관련 주요계획수립	①여권 주요업무 계획수립	★					○
26.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①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신규·재발급)	○					
	②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					
	③여권발급 신청서 심사	○					
	④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	○				
	⑤여권교부	○					
	⑥미수령 여권 무효처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국 청 장	
27.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등 회계 관리	①수수료 징수 등 관리(영수필증 관리)	★		○			
	②신원미회보자 수수료 국고귀속	★		○			
	③수수료 면제	★		○			
28. 기타 여권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①여권반납 및 보관	○					
	②여권 분실신고	○					
	③여권분실자 수사의뢰	★		○			
	④여권발급 신청서 폐기처분	★		○			
29. 통합증명 발급창구운영	①인감증명서 발급	○					
	②주민등록표등(초)본 열람 및 발급	○					
	③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					
	④제적부의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⑤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⑥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열람발급	○					
	⑦의료급여증명서 열람·발급	○					
	⑧모부자가정증명서 열람·발급	○					
	⑨장애인증명서 열람·발급	○					
	⑩공장등록증명 열람·발급	○					
	⑪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					
	⑫지적(임야)도 열람·발급	○					
	⑬건축물대장 열람·발급	○					
	⑭토지이용계획확인확인 열람발급	○					
	⑮개별공시지가확인 열람·발급	○					
	⑯통합민원 발급대장 일일결산	★	○				
	⑰통합민원 수수료 정산	★	○				

8. 체납 정리 팀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체납액 정리계획 및 종합관리	①지방세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수립(과년도)	★			○	
	②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		○		
	③체납액 징수실적 관리	★	○			
	④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	○			
	⑤독촉장 관리	★	○			
	⑥재산조회 및 회보	★	○			
	⑦체납세 증가산금 조정	★	○			
	⑧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	○			
2. 체납처분	①시세 및 구세 결손 처분(과년도)	★		○		
	②압류물품의 보관 처리	★	○			
	③부동산 및 차량 압류·해제(현·과년도)	★	○			
	④기타자산 압류·해제(현·과년도)	★	○			
	⑤압류재산의 공매처분(현년도 제외)	★		○		
	⑥체납자의 형사고발(과년도)	★		○		
	⑦면허취소 요구	★	○			
	⑧법원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			
	⑨관허사업 제한요구	★	○			
	⑩신용정보 등록	★		○		
	⑪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리	★	○			
	⑫출국금지 등에 관한 사무	★	○			
	⑬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 운영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 징수포상금	①시세 및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신청	★		○		
	②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신청	★		○		
4. 납세 등에 관한 제증명 발급	①지방세 제증명 발급	○				
	②지방세 제증명 대장관리	○				
	③인증기 수수료 결산대장 관리	★	○			
5. 징수에 관한 사항	①과년도 징수촉탁	★	○			
6. 과태료 징수	①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	○			
	②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	○			
	③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	○			
	④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고액·상습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	★	○			

9. 복지 행정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사회복지	①사회복지 종합계획	★					○ ○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					
	③사회복지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					
	④걸인,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뢰	★					
	⑤보훈단체 지원	★	○				
	⑥부랑인 귀향여비 지급	★	○				
	⑦전세자금관리 및 대여	★			○		
	⑧주민생활서비스업무 총괄	★				○	
2. 재해구호	①각종 재해자 발생보고		★				○
	②각종 재해자 구호	★		○			
	③구호물자 관리 및 재해의연금 관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사항	① 내부품질심사 ② 직무기술서 작성 ③ 메뉴얼 작성 ④ 품질방침개정 및 품질행정 검토보고 ⑤ 품질행정위원회 운영	★ ★ ★ ★ ★		○	○	○	○
4.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관리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신청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리	★ ★		○ ○			
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①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② 거주지보호대상 변동사항 및 각종 신청서 접수대상 사본보고	★ ★	○ ○				
6.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사항 지도확인 ③ 생계급여 등 사업비 배정 ④ 생계급여 등 추진실적 보고 ⑤ 수급자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⑥ 수급자 결정보고 및 확정시달  ⑦ 수급자 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가. 선정기준 부합자 급여결정 등 나. 특례기준 대상자 급여결정 등 ⑧ 수급자 이의신청 ⑨ 생계급여 실적 보고 ⑩ 수급자 생계급여(수급금품 등 지급) ⑪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  ⑫ 수급자 각종 급여지급(긴급구호비)에 관한 사항  ⑬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					
	②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진료비 지급	★			○		
	③ 지출계산서 작성·보고		★				○
	④ 세입징수액 계산서 작성·보고		★				○
	⑤ 세입징수액 결정	★			○		
	⑥ 의료급여대불금 납입고지	★		○			
	⑦ 대불금 귀속 통보	★	○				
	⑧ 대불금 감액 결정	★			○		
	⑨ 의료급여기금 운영 현황 보고	★		○			
	⑩ 의료급여기금 결산 보고	★		○			
	⑪ 의료급여대불금 결손 처분	★			○		
	⑫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재심사)의뢰	★		○			
	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
	⑭ 의료급여 제한여부 결정	★		○			
	⑮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		○			
	⑯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					○
	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
	⑱ 행려사망자 관련 사항	★		○			
8.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① 자활지원계획수립	★					○
	②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				○	
	③ 자활기금 운영	★			○		
	④ 민간위탁자활사업 시행	★			○		
	⑤ 자활근로사업 연계 구축	★			○		
	⑥ 자활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			○		
	⑦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⑧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⑨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⑩ 생업자금 관리 및 대여	★			○		
	⑪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⑫ 조건부 수급자 관리	★		○			
	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운영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9. 실업자 대책	①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②각종 실업대책 추진사항 관리 및 처리	★	★	○			○
1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①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심의회 운영 ②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 및 통보 ③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지정 및 위탁 ④훈련실시 기관 점검 ⑤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강료, 수당지급 및 관리	★ ★ ★ ★	★	○ ○ ○ ○	○		
11. 직업 안정에 관한 사항	①구인·구직 안내 ②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③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 ④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가. 신규 등록 나. 변경등록 및 각종신고등 다. 폐지신고 ⑤취업정보센터 운영	○ ★ ★ ★ ★ ★ ○ ★		○ ○ ○ ○ ○	○		
12. 실업안정 관련 업무	①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②공공근로사업 선정 ③공공근로사업 대상자모집 및 선정 ④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인원관리 및 배치 ⑤공공근로사업 예산관리 ⑥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⑦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및 지도 점검 ⑧공공로사업 우선순위 결정	★ ★ ★ ★ ★ ★ ★ ★	★	○ ○ ○ ○ ○ ○	○	○	○
13. 노동조합	①노동조합 설립, 변경 및 해산신고 ②노사분규 조정지도 ③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운영 ④부당노동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⑤노사안정 차원의 협조·지원사항	★ ★ ★ ★		○ ○ ★ ○ ○			○

10. 주민복지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포함)	①법인에 관한 사항						
	가. 생계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		○			
	나.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진달)	★		○			
	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진달)	★				○	
	라. 사회복지법인 명칭변경	★	○				
	마. 지도감독(시설포함)	★			○		
	바.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		
	사. 기증용품 증명발급	○					
	아. 법인 임원임면 보고	★			○		
	자. 법인 임원 변경	★			○		
	차. 법인 정관변경 인가	★			○		
	②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설치신고 및 취소기능보강	★				○	
	나. 정비의 권고	★			○		
	다. 명칭 및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	★	○				
	라. 시설폐지 승인 및 사업정지	★				○	
	마.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 정원조정	★		○			
	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					
	사. 사회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계획 수립	★		○			
	2.장사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화장장,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				○
②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공고 허가		★		○			
③사설묘지 구역변경 허가		★		○			
④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시설변경허가		★			○		
⑤시설의 개수명령, 개장명령		★		○			
⑥관리인 보고 및 변경승인		★		○			
⑦시설의 이전 및 사용금지 명령		★		○			
3.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①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
	②가출노인홍보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노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				○
	②노인일자리사업비 지원·관리	★		○			
	③노인자원봉사활동 사업계획수립	★			○		
	④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원 및 관리	★		○			
	⑤복지자원 점수 저축제	★		○			
	⑥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정	★			○		
5. 노인교통수당	①노인교통수당지급	★		○			
	②노인교통수당 지급통보 및 관리	★		○			
6. 노인복지기금관리	①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수립	★			○		
	②노인복지기금관리	★		○			
7. 노인건강검진	①노인건강검진계획수립	★			○		
	②노인건강검진 결과보고	★		○			
8. 저소득노인지원	①영세치매노인 지원	★		○			
	②무의탁노인지원	★		○			
9.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①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사업계획수립		★				○
	②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				○	
	③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회관)	★				○	
	④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휴양소)	★		○			
	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			○		
	⑥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			
	⑦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		○			
	⑧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급	★		○			
	⑨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신청						
	가. 법규나 지침에 의한 보조금 신청	★			○		
	나. 특별사업에 의한 보조금 신청	★			○		
	⑩노인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
⑪노인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		○				
⑫시설입소의뢰 및 입소사항 통보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0. 경로당관리에 관한 사항	①경로당 관리 계획 수립	★		○			
	②시범경로당 선정	★			○		
	③시범경로당 운영·관리등에 관한사항	★		○			
	④모범경로당 선정·추천	★		○			
	⑤경로당 보수에 관한 사항 가. 5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미만	★ ★			○ ○		
11.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①보육시설 설치인가 및 인가사항 변경	★		○			
	②보육정책위원 위·해촉 및 위원회 운영	★			○		
	③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				○	
	④국·공립 보육시설의 변경	★			○		
	⑤국·공립 보육시설장 임명 및 위탁계약	★					○
	⑥보육시설보조금지급	★		○			
	⑦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		○			
	⑧보육시설 지도감독	★			○		
	⑨ 보육시설 종사자 재직(경력)증명 발급	○					
	⑩보육정책 수립	★					○
	⑪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		○			
12.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①소년소녀가정세대 책정 및 해제	★		○			
	②소년소녀가정 보호(결연)에 관한 사항	★		○			
	③어린이놀이터 설치	★			○		
	④어린이놀이터 관리	★		○			
	⑤아동복지 계획수립		★				○
13.요 보호아동에 관한 사항	①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가. 아동생활시설 설치 나. 아동이용시설 설치(지역아동센터 등)	★ ★			○	○	
	②아동복지시설 지원	★		○			
	③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			○		
	④보호의 결정 및 수용의뢰, 사후관리	★		○			
	⑤결식아동지원	★		○			
	⑥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⑦아동상담 및 시설입소에 관한 사항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과장·팀장	
14.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①여성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					○
	②여성교양교육 운영계획 수립	★			○		
	③여성상담 및 시설입소에 관한 사항	★		○			
	④요보호여성 선도계획 수립	★		○			
	⑤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수립	★			○		
	⑥여성발전기금 관리	★		○			
	⑦여성단체의 운영 및 육성		★	○			
	⑧여성자원봉사회 운영	★		○			
	⑨여성합창단 운영	★		○			
	⑩여성폭력관련시설 지도감독	★			○		
	⑪여성폭력관련시설 설치(변경)신고	★		○			
	⑫여성폭력관련시설 보조금 지원	★		○			
	⑬직장내 성희롱예방 종합계획 수립	★					○
15. 장애인복지	①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				○	
	②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				○	
	③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관리(법인포함)	★			○		
	④장애인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지급	★		○			
	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감독	★			○		
	⑥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			
	⑦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		○			
	⑧장애인 복지관 건립	★					○
	⑨장애인 단체지원 및 관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과장/팀장	
16. 청소년 보호	① 청소년보호법·성보호법 시행 종합계획 수립		★				○
	②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관리		★			○	
	③ 청소년 보호대상 관련업무	★		○			
	④ 청소년보호관련 홍보·교육 업무	★		○			
	⑤ 청소년보호관련 시민운동 지원관련 업무	★		○			
	⑥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	★		○			
	⑦ 과징금부과 이의신청 관련사항 관리	★		○			
	⑧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지원	★		○			
	⑨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업무	★		○			
	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		○			
	⑪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유해악물유통 합동지도단속	★		○			
	⑫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		○			
	⑬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		○			
	⑭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 권한중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			
	⑮ 청소년보호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관련 업무	★			○		
17. 청소년 육성	① 청소년 건건육성 종합계획수립			★			○
	②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감독	★			○		
	③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④ 청소년지도위원 운영관리		★				○
	⑤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		○		
	⑥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등	★			○		
	⑦ 중·고교 중퇴청소년 대책 추진	★		○			
	⑧ 불우청소년 지원등 기타 청소년 건건육성	★		○			
	⑨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			○		
	⑩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관리		★				○
	⑪ 복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종합계획 수립		★				○
	⑫ 복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8.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①결혼이주여성지원 업무	★		○			
	②결혼중개업 신고 및 지도감독	★		○			
	③건전가정 육성	★		○			
	④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			○		
	⑤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지결정 및 보호	★		○			
19.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①출산장려지원 업무	★		○			
20.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	①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결정·변경 및 이의신청	★		○			
	②기초노령연금 지급	★		○			
2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①(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설치	★			○		
	②(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변경, 폐지	★		○			
	③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급	★		○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지급	★		○			
	⑤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 공단 예탁	★		○			
22.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①노인돌보미바우처 계획수립	★					○
	②노인돌보미바우처 예탁금 예탁	★		○			
	③노인돌보미바우처 대상자 선정, 중지	★		○			
	④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		
	⑤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계획 수립	★			○		
	⑥무료급식소 지정 및 운영	★			○		
	⑦재가이동목욕차량 지원	★		○			

11. 청소 행정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①생활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			○
	②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
	③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 허가		★		○		
	④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			○
	⑤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업무 지도감독	★		○			
	⑥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및 행정처분	★		○			
	⑦대형폐기물 처리신고 및 수수료 징수	★	○				
	⑧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	○				
2. 청소장비 및 인력 관리	①청소장비 개선, 보강에 관한 계획 수립		★		○		
	②공중용 쓰레기 처리용기 설치관리	★		○			
	③청소장비 관리 및 차량 운영	○					
	④환경미화원 관리	★		○			
	⑤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	○				
3.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①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			
	②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	○				
	③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		○			
	④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⑤배출사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⑥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 발급	○					
	⑦폐기물 중간처리업(변경)허가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			○
	②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			
	③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신고·승인 및 지도감독	★		○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①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			○
	② 음식쓰레기 감량 관련 종합계획 수립			★			○
	③ 1회용품 사용지도·단속 및 조치	★		○			
	④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		○		
	⑤ 재활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		○			
	⑥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⑦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		○		
	⑧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⑨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					
	⑩ 재활용품의 수집·운반·매각에 관한 사항	★		○			
	⑪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			
	⑫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및 지도감독	★		○			
6.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					○
	②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				○
	③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				○
	④ 분뇨등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		★				○
	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변경)	★		○			
	⑥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		○			
	⑦ 분뇨등관련영업 변경허가	★		○			
	⑧ 분뇨등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위탁 대행계약 체결 및 해약	★					○
	⑨ 분뇨등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고발	★		○			
	⑩ 분뇨등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기타 행정 처분	★		○			
	⑪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및 설계·시공업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고발	★		○			
	⑫ 분뇨등 재활용에 관한 사항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6.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⑬ 분뇨처리담당자 등의 교육	★	○				
	⑭ 휴·폐업신고 및 재개업	★	○				
	⑮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 가.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 나. 청소 불이행에 따른 이행촉구 및 과태료부과 다. 내부정소기간 연장	★		○			
7.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			
	②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				
	③ 오염도 감사의뢰	★	○				
	④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용량 검토	○					
	⑤ 오수배출량 산출	○					
	⑥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					
	⑦ 51인용 이상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		○			
	⑧ 오수처리시설등 운영기구에 관한 사항	★		○			
	⑨ 식품접객업등 영업허가의 취소요청	★		○			
8.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공중화장실 설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시책강구	★			○		
	②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					○
	③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④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		○			
	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관리인 교육실시	★		○			
	⑥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	○				
	⑦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		○			
	⑧ 유료화장실 신고	★		○			
	⑨ 공중화장실 시설점검실시	★	○				
	⑩ 공중화장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			
	⑪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		○			

12. 환경 위 생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환경보전 종합계획	① 환경보전 종합계획 ②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제한		★	★		○	○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에 관한 사항	① 검토의견서 제출 ② 주민홍보 및 공람 ③ 환경 분쟁에 관한 사항	★	★	○	○		
3.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②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해촉	★		★	○		○
4.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시설폐쇄)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개시신고 ④ 배출(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청 ⑤ 배출시설 관리인 선임(개임)신고 ⑥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⑦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⑧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업무 ⑨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고(변경)	★ ○ ○ ○ ○ ○ ★ ★ ★		○ ○ ○ ○ ○			
5.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계획 ②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차량) ③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부동산 및 기타자산) ④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 ★	★	○ ○ ○	○		
6. 자연보호운동 추진	자연보호운동 추진		★		○		
7.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업무 총괄	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 총괄		★				○
8.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①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②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봉인	★ ○		○			
9.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		○			
10.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	①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②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및 과태료등 부과 ③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수도요금 경감	★ ★	★	○ ○	○		
11. 저수조등 급수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급수장치 위생상 조치·지도·감독 ② 저수조 청소업 개설영업정지등 ③ 저수조 청소업 변경·폐·휴지신고 ④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등 ⑤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교육	★ ★ ○ ★ ★		○ ○ ○ ○			
12.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②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소독채수수질검사등 관리 ③ 수질 이상 여부 홍보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과·팀·장	
13.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	①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업무	★		○			
1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①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단속 ② 수렵·조수포획 승인 ③ 조수 수출·입 허가 ④ 수렵 면허 및 변경허가 ⑤ 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 ★ ★ ○ ★		○ ○ ○ ○			
15. 환경지도에 관한 사업 계획	① 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 수질, 소음, 진동) 단속계획 수립 ②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단속계획 수립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계획 수립 ④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계획 수립		★		○		
16.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대기, 수질,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① 오염도 감사의뢰 ② 배출업소 행정처분(경고, 시정, 개선, 명령, 조치 이행명령, 변경명령, 폐쇄, 고발, 사용금지) ③ 배출업소 행정처분(이전명령, 허가취소, 조업 정지) ④ 무허가 배출업소 행정처분(사용금지, 폐쇄, 고발) ⑤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청문 등	★ ★ ★ ★ ★	○		○		
17.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량에 관한 사항	① 연료용 유류 시료채취 및 황함유 감사의뢰 ②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명령	★ ★	○		○		
18.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항	① 특정 공사 사전신고(변경) ②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항 ③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자 행정처분(개선명령·사용금지·폐쇄·고발) ④ 생활소음 기준초과에 따른 조치이행명령(현장처분) ⑤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사용시간제한	★ ★ ★ ○ ★	○		○ ○		
19.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단속에 관한 사항	① 기준초과 운행차 행정처분 및 고발 가. 구청단속에 따른 현장처분 나. 행정벌 및 시정단속에 따른 처분 ② 개선명령이행 확인 ③ 개선촉구·사용정지명령 및 과태료부과 ④ 확인검사대행자 등록(변경) 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 ⑥ 매연과다발생 신고차량 처분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0. 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사항	①사전안내 및 검사 독촉 ②과태료부과사전통지 및 과태료부과(독촉) ③유효기간연장 신청처리 ④채납자 압류해제(자동차) ⑤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명령 ⑥행정벌 처분에 관한 사항 ⑦과태료부과면제 및 금액감경 ⑧과태료 채납자 채납 처분	○ ★ ★ ○ ★ ★ ★ ★	○	○ ○ ○ ○			
2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사항	①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②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가. 조치이행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행정벌 처분 나. 사용 중지, 사업 중지	★ ★ ★	○	○ ○			
2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	①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 ②오염물질채취 및 오염도 검사의회 ③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의 교육 ⑤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여부 점검·처분	★ ★ ★ ★ ★	○	○ ○ ○			
23. 악취 발생물질 및 생활악취에 관한 사항	①악취방지시책수립 ②악취관리지역지정 요청 ③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요청 ④개선권고 및 조치이행 확인 ⑤개선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 ★ ★ ★ ★	★	○ ○ ○	○	○ ○	
24.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지도	①유독물영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②유독물관리자 교육 ③유독물영업자의 행정처분 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나.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관리자변경명령 등 기타	★ ★ ★ ★	○	○ ○ ○			
25.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①토양환경보전 대책지역 지정요청·대책계획 수립 등 ②토양보전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③토양오염관련 행정처분등 ④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등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 이전 나. 토양오염 유발시설 사용 중지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방지조치 등 ⑤시료(토양)채취 통지서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6.공중위생업소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①공중위생업소 종합관리계획 수립 ②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판정 및 공표관리 ③공중위생관련 단체관리	★	★		○		
27.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 사항	①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업, 아·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가.영업의 신규신고 나.영업의 변경신고 다.영업신고증 교부(재발급포함) 라.폐업신고 ②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가.영업의 신규신고 나.영업의 변경신고 다.영업신고증 교부(재발급포함) 라.폐업신고	★ ○ ○ ○		○			
28.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①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가.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폐쇄, 영업정지 나.위 “가” 항의 사전보고 다.과징금, 과태료처분·관리 라.개선명령, 경고 ②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소 행정처분 가.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폐쇄, 영업정지 나.위 “가” 항의 사전보고 다.과징금, 과태료처분·관리 라.개선명령, 경고 ③공중위생업소 시설·설비 및 준수사항관리 ④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⑤무신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 ★ ★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9. 기타공중위생관리	① 공중위생 교육관리 ②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③ 기타 공중위생 관련 사항	★	○				
		★	★	○			
		★		○			
30.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① 음식 문화개선 지도점검 ② 불법 퇴·변태 무허가(신고)영업행위 지도단속 ③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④ 식중독 예방 지도단속 ⑤ 기타 지도단속 관련 민원처리 ⑥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		○			
		★		○			
		★		○			
		★		○			
		★		○			
		★		○			
31. 모범업소 지정	①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② 기타 모범업소 관련업무	★		○			
		★	○				
32.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집행 ② 식품진흥기금 용자 ③ 기타 기금관련 업무	★			○		
		★		○			
		★		○			
33. 위생감시	①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지도육성 계획수립 ② 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③ 무허가(신고)관련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		★		○		
		★		○			
		★		○			
34. 전시 식품 동원	① 기본 계획수립 ② 식품 동원에 관한 사항		★		○		
		★	○				
35. 학교 환경 정화구역 설정	① 학교 환경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6. 식품위생에 관한 민원사무	①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물 제조업, 식품 제조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가. 신고	○					
	나. 신고사항 변경	○					
	다. 품목보고	○					
	②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운반업						
	가. 신고	○					
	나. 신고사항 변경	○					
	③식품소분·판매업						
	가. 신고	○					
	나. 신고사항 변경	○					
	④식품접객업						
	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허가(변경)	★		○			
	나.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변경)	○					
	⑤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가. 신고	○					
	나. 신고사항 변경	○					
	다. 영양사, 조리사 선·해임 신고	○					
	⑥기타						
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나. 폐업, 재교부 신고	○						
37. 하수도사용료 과징	①하수도 사용료(원인자 부담금 포함)조정결의	★			○		
	②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	○					
	③사용료 이의신청·감면신청	★		○			
	④과태료 및 추징금 조정	★		○			
	⑤각종 통계보고	★		○			
	⑥시간당 출수량 결정 및 조정심사	★		○			
	⑦계측기 교체, 수리불인	○					
	⑧수입일계표 정리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8. 지하수에 관한 사항	①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			○		
	②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		○			
	③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시정명령등	★		○			
	④원상복구, 시설의 철거명령 등	★		○			
	⑤지하수 보전구역내 행위제한	★			○		
	⑥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오염방지 조치 등	★		○			
	⑦출입검사	○					
	⑧과태료 부과징수	★		○			
	⑨지하수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	★			○		
	⑩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액조정	★		○			
	⑪자금운용 및 배정관련 업무	★		○			
	⑫각종 통계 보고	★		○			
	⑬체납처분	★	○				
39.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사항	①구매계획 작성 수립	★			○		
	②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		○			
	③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			
	④과태료 부과	★		○			
40. 낙동강소역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①낙동강소역권 수질관리 계획 수립	★					○
	②기타 협의사항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1.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①배출시설 행정처분(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		○			
	②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 접수	★		○			
	③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		○			
	④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변경)신고	★		○			
	⑤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			
	⑥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신고	★		○			
	⑦관리대상기기 등의 조치 명령	★		○			
	⑧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검사, 청문 등	★		○			
	⑨과태료 부과	★		○			
42. 탄소배출권거래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①시범사업 계획수립	★					○
	②기준배출량 산정 및 추진실적 보고	★		○			
	③배출권거래 신청	○					

13. 청정산업녹지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경제활성화 대책	①지역경제의 종합발전 계획			★			○
	②단위별 경제발전계획 종합기획 조정	★		○			
2.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조정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조정	★			○		
3. 지역물가 안정 관리	①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		★			○	
	② 특별대책기간 안정대책 수립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정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과장/부과장	
4. 에너지소비절약 종합 계획	①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		○		
	②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 및 취소	★		○			
	③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사용 시설장부 등의 기록작성 및 보조감독 확인	★		○			
	④검사대상기기의 자체검사 기록작성 보존에 대한 감독확인	★		○			
	⑤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 조사 및 감독	★		○			
	⑥기존주택 단열개수	★		○			
	⑦에너지관리 대상업체 지도감독, 변경사항 처리	★		○			
	⑧에너지 소비절약 평가	★		○			
5. 저축추진등	①저축추진 계획수립	★		○			
	②저축유공자 포상 추천	★		○			
6. 담배소매업의 지정	①소매인 지정·승계신청 및 휴·폐업신고	○					
	②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③소매인 지정취소 및 불가	★		○			
	④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회	○					
7. 계량기에 관한 사항	①계량기 수리증명업의 등록	★		○			
	②계량기 수리증명업의 변경(이전)신고	★		○			
	③계량기 수리증명업의 휴·폐지 신고	○					
	④자치관리 인정	★		○			
	⑤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		○			
	⑥계량기 수시검사	★		○			
8. 식량증진종합 추진	식량 증진 종합 추진	★		○			
9. 농기계 공급	농기계 공급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0. 병충해 재해대책 수립	병충해 재해대책 수립	★		○			
11. 영농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배정	영농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배정	★		○			
12. 농지확대 추진	①농지개량사업 승인신청 및 개답허가 ②개발촉진 지역내 형질변경 ③공공용지의 국가 무상귀속	★ ★ ★			○ ○ ○		
13.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①농지전용 협의허가 ②농지 일시전용	★ ★		○ ○			
14. 농지원부	①농지원부 작성 비치 ②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 ③농지원부 등본 발급	★ ★ ○		○ ○			
15. 비료관계	①자금비료 증산, 부정비료 단속, 비료수급	★		○			
16. 농약	①농약 판매업 등록, 부정농약 단속 ②농약 판매업 등록변경	★ ★	○	○			
17. 양곡가공	①양곡 가공업 등록 ②양곡 가공업 시설변경 및 양도승인 ③위반 양곡업소 행정처분 ④하곡, 추곡수매에 관한 사항 ⑤쥐잡기 사업 ⑥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8.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			
19.동물용의약품 판매 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허가	★		○			
20.수산행정	①어업허가	★		○			
	②어업허가 변경사항 수리	○					
	③30톤 미만 어선등록에 관한 사항	★		○			
	④30톤 미만 어선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⑤어업허가증 및 선적증서 재교부	○					
	⑥불법어업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		○			
21.축산물관리	①도축업·집유업·축산물보관업 허가	★			○		
	②도축업·집유업·축산물보관업 변경허가	★		○			
	③도축업·집유업·축산물보관업 변경신고 (상호변경 제외)	★		○			
	④도축업·집유업·축산물보관업 행정처분	★		○			
	⑤축산물판매업·용기등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상호변경 제외)	★		○			
	⑥축산물판매업·용기등 제조업 행정처분	★		○			
	⑦상기업종 상호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⑧상기업종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⑨가축시장 정비 종합계획 수립	★		○			
	⑩부정축산물 지도단속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2.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			
	② 식육포장처리업 변경허가	★		○			
	③ 식육포장처리업 변경신고(상호변경 제외)	★		○			
	④ 식육포장처리업 행정처분	★		○			
23. 도시가스 및 고압 가스판매저장, 냉동 제조 및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 집단 공급, 판매저장 등에 관한 사항	①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		○	
	②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취소	★			○		
	③ 고압가스 제조신고	★	○				
	④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판매허가 및 취소	★			○		
	⑤ 고압가스 사업의 변경허가	★		○			
	⑥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사업의 등록 및 취소	★		○			
	⑦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수리	★	○				
	⑧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및 취소		★			○	
	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신고	★		○			
	⑩ 액화석유가스(판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및 취소	★			○		
	⑪ 공급규정(집단공급)의 승인	★		○			
	⑫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사업의 변경허가	★		○			
	⑬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			
	⑭ 도시가스 공사계획(변경)승인	★		○			
	⑮ 도시가스 공사계획(변경)신고	★	○				
	⑯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신청	★		○			
	⑰ 가스위해방지조치(사용정지, 폐기, 이전 등)명령	★		○			
	⑱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			
	⑲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	○				
	⑳ 과징금 부과징수	★			○		
	㉑ 과태료 부과징수	★		○			
24.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의 등록	★			○		
	②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		○			
	③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	★			○		
	④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수리(변경수리포함)	★	○				
	⑤ 이동판매차량 변동사항 보고	★	○				
	⑥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		○			
	⑦ 지위승계신고(보고)수리	★	○				
	⑧ 과징금 부과징수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5. 도시녹화사업	①도시녹화 조성 및 사업계획수립 ②꽃도시 조성계획 수립	★	★		○	○	
26.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①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②도시공원의 설치 ③도시공원의 관리 ④도시공원 사용 및 점용허가, 변경허가 ⑤공원내 각종 위법행위 조치	★ ★ ★	★	★	○ ○ ○	○	○
27. 가로수 및 화단 녹지에 관한 사항	①가로수 및 화단녹지 조성 ②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③시설녹지 점용허가	★ ★	★		○ ○		
28. 임목벌채·산림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①임목벌채 허가 ②임목벌채 신고 ③산림 형질변경 허가 ④공·사유림내 토석(토사)채취 허가 ⑤임산물 굴·채취 허가 ⑥임목벌채, 산림형질변경, 임산물 굴채취 허가기간 연장 ⑦토석의 매각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⑧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⑨입산 허가 ⑩산림법 위반자 처리 ⑪타 법에 의한 인·허가(지장목 벌채)	★ ★ ★ ★ ★ ★ ★ ★ ★ ★ ★		★	○ ○ ○ ○ ○ ○ ○ ○ ○ ○	○	
29. 보전임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보전임지 지정고시 및 해제 ②보전임지 전용허가 ③보전임지 전용허가 협의 ④보전임지 전용허가 기간연기 허가 ⑤임도시설 허가	★ ★ ★ ★ ★	★ ★		○ ○ ○ ○	○ ○	
30. 사방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사방지 지정 해제 ②사방지내 사업허가	★ ★			○ ○		
31. 보안림 관리에 관한 사항	①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 ②보안림내 사업허가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2. 양묘장 관리	① 다년생식물 재배허가 신청	★			○		
	② 양묘장 관리	★		○			
33. 국토공원화 운동	① 국토공원화운동 추진계획		★			○	
	② 국토공원화운동에 관한 교육 홍보	★		○			
	③ 국토공원화 사업관리	★			○		
34. 조림사업계획	① 조림사업계획		★			○	
	② 조림의 반환 조치권	★			○		
	③ 입목벌채, 임산물 이용가공 및 판매지에 대한 조림 명령	★			○		
	④ 무육사업(간벌)	★		○			
35. 산림보호	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
	②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해제		★			○	
	③ 현지 산림보호계 등의 연대보호명령	★			○		
	④ 청원 산림보호 배치승인	★		○			
	⑤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		○			
	⑥ 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	★		○			
36. 수상레저기구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전·출입(주소변경)	★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및 말소	○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교부·재교부 및 등록원부 열람신청	○					
	④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		○			
	⑤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운행허가	★	○				
37.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 점검	①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등록취소	★		○			
	②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③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					
	④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안전점검	★		○			
	⑤ 수상레저사업장 정비·원상복구·사용정지 명령	★		○			
38.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①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	★		○			
	②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		○			
	③ 재발급, 휴폐재개업 신고	○					
	④ 유기동물 보호 관리	★		○			

14. 자원봉사코디팀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복지코디에 관한 사항	①복지코디네이션 추진	★				○
	②지역복지자원 발굴, 관리, 동원, 조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관리	★		○		
	③지역특수사업 개발, 복지대상자별 서비스연계	★				○
	④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조사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지원	★		○		
	⑤긴급복지지원사업	★	○			
	⑥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		○		
	⑦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구축	★		○		
	⑧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수혜자연계, 프로그램 개발	★		○		
	⑨무료급식소등 지원·관리	★	○			
2. 어려운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①어려운 이웃돕기 시책·개발 추진	★				○
	②이웃돕기 후원자(기관, 단체) 발굴·관리, 수혜자 연계	★	○			
	③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각종 지원사업 관리	★	○			
3.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①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	★				○
	②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취소	★			○	
	③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결정	★		○		
	④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		○		
	⑤시설의 시설장 발견	★	○			
4. 음식물나눔사업 (푸드뱅크)운영	①음식물 나눔사업 운영자 지정	★				○
	②음식물 나눔사업 운영 및 지원	★	○			
	③음식물 나눔사업 운영 및 지도감독	★		○		

15. 경제진흥팀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지역의 투자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			○
	②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③ 구 균형발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	○			
2.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수립	★				○
	② 시장정비사업 추진사항	★		○		
	③ 시장정비조합 청산에 관한 사항	★			○	
	④ 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관한사항	★				○
	④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		
	⑤ 시장관련 일반적인사항	★	○			
3. 대규모점포 및 유통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				○
	②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	○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대표자) 신고(변경신고포함)	★	○			
	④ 대규모점포 휴업, 폐업등의 신고	★	○			
	⑤ 대규모점포 개설자 지위승계신고	★		○		
	⑥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			
	⑧ 시장관리·운영 지도	★	○			
	⑧ 상인회 등록	★			○	
	⑨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	★		○		
	⑩ 시장활성화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				○
⑪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			
4. 중소기업 육성	① 중소기업지원 종합계획수립 조정	★		○		
	② 창업사업 계획 승인	★		○		
	③ 중소기업자금 지원 추천	★	○			
	④ 중소기업 애로상담	★	○			
	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관련자 교육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5.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사항	①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관련사항	★	○			
	②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선정	★	○			
	③ 공장등록업무	★	○			
6. 공산품관리	① 사전검사 공산품 품질관리	★	○			
	② 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	○			
	③ 불법 공산품의 유통단속	★	○			
	④ 불법 공산품에 대한 행정처분	★	○			

16. 교 통 행 정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교통수요관리	① 교통수요 관리업무 계획수립 시행			★			○
	② 승용차 부제 계획수립 시행		★				○
2. 교통량조사	① 조사원 선정	★		○			
	② 조사지점 선정 및 조사결과 보고	★		○			
	③ 차량 주행속도	★		○			
3. 주차장관리	① 구단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계획수립 시행		★				○
	② 공영노상주차장 사용제한 및 설치·폐지	★		○			
	③ 민영노외주차장 설치관리	★		○			
	④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관리	★		○			
	⑤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변경 통보	★	○				
	⑥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보조 및 용자 알선	★			○		
	⑦ 주거지전용주차장 시행	★			○		
	⑧ 유료주차장 대장 기록관리	★		○			
	⑨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시설의 개선 명령	★		○			
	⑩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시설의 과징금 부과	★		○			
	⑪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및 개선사항 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4. 교통체계 관리 개선 사업 추진	①사업계획 수립 ②사업설계 및 시행 ③사후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건의	★ ★ ★			○ ○		
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교통영향평가 협의 의견제출 ②타실과 의견 협의사항 회신	★ ★		○ ○			
6. 개인택시·용달 및 개별 화물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①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②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수리 ③개별화물(개인용달)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④운송사업면허증 분실 재교부 ⑤운송시설(차고지)신고 수리 ⑥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약관신고 수리 ⑦개별화물(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신고 ⑧과징금 부과, 징수	★ ○ ★ ○ ○ ○ ★ ★		○ ○ ○ ○			
7.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①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및 허가사항신고 ②운송약관의 신고 ③개선명령 ④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⑤상속신고, 실태조사 ⑥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⑦과징금의 부과·징수 ⑧청문, 보고, 검사, 질문등 ⑨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에 관한 이의신청의 접수통보	★ ★ ★ ★ ★ ★ ★ ★ ★		○ ○ ○ ○ ○ ○ ○ ○ ○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 버스, 대여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항	①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②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③청문,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9.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①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신고		★				○
	②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변경)인가	★		○			
	③정류소 신설 및 조정	★		○			
	④운송사업 개시신고 및 기간연장 신고	○					
	⑤운송사업의 상속신고	★		○			
	⑥사업의 휴지 및 폐지인가	★		○			
	⑦운송사업 양도양수의 법인의 합병인가	★		○			
	⑧운송사업의 정지처분(행정처분)	★			○		
	⑨운송사업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			
10. 차량동원에 관한 사항	①비상수송동원 계획수립		★				○
	②자원조사 및 동원대상차량 대체지정	★		○			
	③기타 자원관리 및 영장교부	★		○			
11.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항	①공사시행 변경인가 및 사용요금 인가		★				○
	②공사완성 검사	★				○	
	③자동차정류장 합격처분	★			○		
	④공동개시 기간지정 및 신고수리	★			○		
	⑤이용규정의 인가 및 사용약관의 인가	★			○		
	⑥관리에 대한 시정명령	★			○		
	⑦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			
	⑧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		○			
	⑨사업의 개선명령 및 위치규모 변경인가	★			○		
	⑩상속신고 수리	★		○			
	⑪전용자동차정류장 이용규정인가, 변경인가 시정명령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2. 사업용자동차 운행 지도단속	①계획수립	★			○		
	②운행지도 단속보고	★		○			
	③수송대책 수립	★			○		
	④ 시내버스 및 시내합승여객 자동차운송 사업중 운송 개시전 시설확인	★		○			
	⑤동 부대시설 위치변경	★		○			
	⑥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개시전 시설확인	★		○			
	⑦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		○			
	⑧노선화물영업소 취급소인가 및 지도감독	★		○			
13.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항	①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		
	②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금지권한	★		○			
	③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미필차량과태료 처분	★		○			
	④자가용자동차 위반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		○			
	⑤보고검사	★		○			
14.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지도감독	①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신고	★		○			
	②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양도, 양수인가 및 변경허가 신고	★		○			
	③사업계획의 변경신고(시설변경 폐지, 휴지, 양도 양수 법인해산)	★		○			
	④사업의 개선명령 및 명의를 이용금지	★		○			
	⑤법규위반업소의 행정처분	★		○			
	⑥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		○			
	⑦운송주선 약관의 신고	★		○			
15.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	①합병상속 상호명의 및 개시, 휴지, 폐지 신고수리	★		○			
	②개선 및 사업정지명령	★		○			
	③영업실적 보고	★		○			
	④관리사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		○			
	⑤관리사업자 실태점검 및 지도	★		○			
	⑥중고자동차매매업 조사원증 발급보고	★		○			
	⑦중고자동차매매업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 신고수리	★		○			
	⑧자동차 정비업 등록	★		○			
	⑨무허가업소 단속 계획수립 및 결과	★		○			
	⑩중고자동차 매매제시 매도반환 신고	★		○			
	⑪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양도양수인가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5.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	⑫폐차(이전)명령 및 청문	★		○			
	⑬대여사업 계획변경 이행신고	★		○			
	⑭과태료 처분						
	가. 법규위반차량	★		○			
	나. 자동차등록(검사증)미비차 운행차량 (단, 자가용 및 관할업용 차량에 한함)	★		○			
	⑮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가. 과징금 부과 및 징수결정	★		○			
나. 사업의 양도양수	★		○				
⑯부분정비업의 등록	★		○				
⑰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			○			
16. 자동차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①노상정비 위반차량 정비명령	★		○			
	②자동차의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검사명령	★		○			
	③자동차 점검 및 기록관리(단, 임시검사에 한함)	★		○			
	④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					
17. 삭도사업	①준공검사 및 개시, 개선명령, 휴지, 폐지신고	★		○			
	②공사준공 기간지정 및 연장인가	★		○			
	③사업 양도양수 합병 해산인가	★		○			
	④정기점검 및 사고보고 처리	★		○			
	⑤임원의 해임	★		○			
18.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①번호판 및 봉인제작 지시	★		○			
	②등록현황 보고	★		○			
	③이륜차 민원 처리	○					
19. 노상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①자진처리 명령	★		○			
	②강제처리통지 및 공고	★		○			
	③강제처리 및 고발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기 관 장	
20. 자동차(이륜차포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	①책임보험 미갱신가입자 가입명령 통보 ②과태료부과 예고(청문) ③과태료 징수(감액,결손) 결정 및 고지 ④과태료미납자 체납처분 ⑤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⑥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조치 ⑦과태료 미납자 압류 해제	★		○			
21.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①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②정기검사 명령 ③과태료 징수(감액,결손) 결정 및 고지 ④과태료 미납자 체납처분 ⑤과태료 미납자 압류 해제 ⑥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⑦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량 고발조치	★	○				
22. 자동차관련 특별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①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 송치 ②범칙금 부과·징수	★		○			
23. 부설주차장 관리	①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계식 주차장 인종서 (재)교부 ③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 ④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	★		○			
24.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①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②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25.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사항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외)	①자전거 타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②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③자전거 보급에 관한 사항 ④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구축 ⑤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⑥자전거 타기 인센티브 개발 및 부여 ⑦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다른 부서에 분장되지 아니하는 사항	★		○		○	

17. 도시디자인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교통부 소관)	① 관리계획 수립	★			○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			○		
	③ 등기 신청	○					
	④ 측량신청	★		○			
	⑤ 기부채납	★			○		
	⑥ 무상귀속 협의	★		○			
2.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로점용허가(갱신허가)	★		○			
	② 도로점용 허가취소	★			○		
	③ 도로 손괴자(법령위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			
	④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		○			
	⑤ 도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			
	⑥ 권리의무의 양수, 양도 허가(상속신고)	★		○			
	⑦ 회사의 발기인(합병)으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리	★		○			
	⑧ 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			○		
	⑨ 도로의 시설인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사도의 통행료 징수	★		○			
	⑩ 부담금의 강제 징수	★			○		
	⑪ 관내 전도로 유지관리(예산 설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관리)	★		○			
3. 가로기계양 및 관리	① 가로기 계양 및 관리	★		○			
4. 사도설치	① 사도설치(개설, 증축 변경) 허가	★			○		
	② 통행의 제한 및 금지허가	★			○		
	③ 사용료 징수허가	★			○		
	④ 접속구간의 개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5.도로(소파수선) 공사 행정 처분	①공사감독 임명	★		○			
	②준공검사 기한 연기		★		○		
	③공사 중지 명령		★		○		
	④설계변경	★			○		
	⑤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가. 도급액 100백만원이상 나. 도급액 100백만원미만		★		○		
6.도로(소파수선) 공사	①공사설계서 작성	★		○			
	②공사측량	★		○			
	③도로의 경미한 보수	★		○			
	④도로공사구간 지장물 조사보고	★		○			
	⑤공사감독 일지작성	○					
	⑥착공계, 준공계	★		○			
7.도로굴착 허가	①도로굴착 허가 신청 · 10㎡ 이상	★		○			
	· 10㎡ 미만	○					
8.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①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및 변경과 기간 연장 (단 현수막, 공연간판 도안변경신고는 제외)	★		○			
	②공연간판 도안변경신고	○					
	③광고물 소유자, 상호, 주소변경 신고	○					
	④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	★			○		
	⑤현수막 신고수리	○					
	⑥게시 시설허가	★		○			
	⑦벽보 및 전단의 신고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9. 옥외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①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		○			
	② 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			○		
1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강제금 과징	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결정	★		○			
	② 이행강제금 감액 이의신청	★		○			
11. 옥외광고업 관리	① 옥외광고업의 등록	★		○			
	② 옥외광고업 폐업사항 신고	○					
	③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					
	④ 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재교부신고	○					
	⑤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및 교육	★		○			
	⑥ 관계법령 위반조치	★		○			
	⑦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			
	⑧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계획	★			○		
	⑨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			○		
	⑩ 옥외광고업종사자 불참신고	○					
12. 옥외광고물 관리	① 광고물관리 계획수립	★			○		
	② 광고물계획 정비지구 조정건의	★			○		
	③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		
	④ 광고물 게시판 관리	★		○			
	⑤ 관계법령 위반조치						
	가. 기본계획수립	★			○		
	나. 계고서 발급 및 고발	★		○			
	다.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		○			
	⑥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3.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①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계획 ②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 ★		○	○		
14. 공공광고 시설물 관리	① 공공광고시설물(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 계획수립 ② 공공광고시설물 등 관리·보수	★ ★		○	○		
15. 광고물 도로 사용료 과징	① 도로사용료 부과 및 징수결정 ② 도로사용료 감액 등 결정 ③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 ★ ★		○	○	○	
16. 광고물설치 위반 과태료 과징	① 과태료부과 및 징수결정 ② 과태료 감액(이의신청) 등 결정	★ ★		○	○		
17.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 과징	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고지 ② 세외수입 체납처분	★ ★		○	○		
18.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시행계획 협의	★ ★			○		○
19. 도시디자인 자치 법규·행정 규칙 관리	① 자치법규·행정규칙 재개정·폐지 ② 북구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기준 재개정	★ ★				○	○
20.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북구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② 북구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운영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1. 도시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① 도시시설물 설치 관련 사전협의	★			○		
	② 도시시설물 조성, 제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22. 도시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①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				○	
	② 시가지경관 및 자연경관에 관한 사항	★				○	
	③ 경관시범지역 지정 및 도시경관상에 관한 사항	★				○	
23. 도시조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① 도시조경 설치 관련 사전협의	★		○			
	② 도심녹화사업 연구·개발·지원	★				○	
24. 건축물 녹화사업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			○		
	② 건축물 옥상관리에 관한 사항	★		○			
25. 디자인 진흥 사업 연구, 개발지원	① 관련기관 및 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	★		○			
	② 공공디자인(안) 공모	★		○			
26. 기타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①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련 민원처리	★		○			
	② 도시디자인 관련 통계업무	★		○			
	③ 기타 도시디자인 관련 사항	★		○			

18. 재난안전관리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①방재대책 계획 수립		★				○
	②재해피해 상황 보고 및 재해복구 계획	★				○	
	③학교, 병원 공중건물의 수용	★			○		
	④토지, 가옥 또는 물자의 수용	★			○		
	⑤물자 보관명령·검사 및 보고	★		○			
2.재난관리 체제 확립	①재난(예방)관리 계획 수립		★				○
	②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
	③재난대비 물자·장비 동원계획	★			○		
3.재난(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①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
	②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 등의 지정 해제	★				○	
	③안전점검대상시설 등 점검 및 관리	★			○		
	④안전조치 명령 및 시정 지시	★			○		
	⑤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			
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①교육 및 홍보계획수립시행	★			○		
5.재난관리 기금 운용	①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			○		
	②기금의 용자 및 지원대상자 결정	★				○	
	③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 수립	★				○	
	④재난관리 기금 결산보고	★			○		
6.재난발생으로 인한 사고	①사고수습계획 수립		★				○
	②재난활동 조사단 편성운영	★				○	
	③응급조치 명령	★			○		
	④피해시설의 복구	★			○		
	⑤사고손실 보상 집행	★				○	
	⑥사고피해액 결과보고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국 장	
7. 병력동원소집지원	불시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 상황 보고	★	○				
8. 공익근무요원 복무 등	①공익근무요원 운용계획 ②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③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 ④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등 신청 ⑤표창 및 사기양양 대책 ⑥복무이탈자 고발관계 ⑦복무분야 변경 ⑧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외근, 점호 등)	★ ★ ★ ★ ★ ★ ★ ★	★       ○		○ ○ ○ ○ ○ ○ ○		
9. 민방위 행정추진	①민방위 계획 ②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계획 ③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④민방위 유공표창 ⑤전시민방위 계획수립	★ ★ ★ ★ ★	★  ★  ★		○ ○ ○ ○		○
10.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계획 수립	①민방위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민방위 장비확충 및 정비 ③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 ★ ★		○ ○ ○			
11. 비상대비 업무	①중점관리 확인의 날 행사 ②을지연습 계획수립 ③을지연습 근무명령	★ ★ ★	★		○ ○		
12. 인력동원 계획 수립	①인력동원 계획 수립 ②인력동원 자원관리 ③인력동원 소요판단 ④중점관리대상 인력관리 ⑤인력동원 훈련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3. 민방위 조직	①민방위 자원관리	★		○			
	②직장민방위대 관리	★		○			
	③시범 민방위대 종합 평가	★		○			
	④민방위대 검열계획 및 실시	★			○		
	⑤수방기동대 조직 육성	★		○			
	⑥민방위 지원대 편성 및 운용	★		○			
	⑦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		○			
	⑧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			
14. 민방위 사태로 인한 시설복구	①시설복구 및 관계기관 협의	★			○		
	②응급조치 명령	★			○		
	③손실보상		★			○	
15. 화생방 방호 손실 보상	①화생방 손실보상	★				○	
16. 민방위교육·훈련	①교육·훈련 계획수립 시행	★				○	
	②교육·훈련 결과보고	★			○		
	③교육·훈련 교관, 강사 임명 또는 위촉	★				○	
	④민방위대요원의 위탁교육 및 비용지출 결정	★		○			
	⑤교육보조재료 연구 및 구입결정	★		○			
	⑥교육훈련중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심의 결정	★				○	
	⑦교육훈련중 사고자 가료심의 결정	★			○		
	⑧교육훈련중 사고자 실비 변상 결정	★			○		
17. 주민신고망 운영	①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운영계획	★			○		
	②주민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	★		○			
18. 민방위대 동원	①민방위대 동원 및 동원협조 결정		★				○
	②상이자 가료 및 병원치료	★			○		
	③자발적 참여자 실비지급	★			○		
19. 민방위사태시 조치	①경보 및 주민대피 결정 및 조치	★				○	
	②주민통제, 소산, 수송결정 및 조치	★			○		
	③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결정 및 조치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0. 벌칙적용 및 고발에 관한 사항	①과태료 부과징수 ②벌칙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		○	○		
21.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① <b>안전관리 자문단 운영</b> ②교량 및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 ③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④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 지도 ⑤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 ★ ★ ★ ★			○ ○ ○ ○ ○		
22.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수	① <b>가로등·보안등 신설계획</b> ②가로등·보안등 보수 대수선 계획 ③보수자재 구매계획 ④공공요금 납부 ⑤ <b>가로등·보안등 보수 등 민원처리</b> ⑥ <b>물품 수불부 및 기타 일지류</b> ⑦ <b>조명시설 신설, 이설 민원처리</b> ⑧ <b>민원현장조사 확인</b>	★ ★ ★ ○ ○ ○ ★ ★	★  ○ ○ ○		○ ○ ○ ○		
23. 배수장 관리	①기기증설 및 신설 계획 ②기기수선 보수 유지 ③공공요금 납부 ④보수자재 구매계획 ⑤각종 일지 ⑥ <b>배수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b>	★ ★ ★ ★ ○ ★	★  ○ ○ ○	○ ○ ○ ○		○	
2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공사 관련 사항	①사업장의 출입, 확인점검 ②기술기준 적합 명령 ③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에 대한 기술수준 적합 명령 ④ <b>전기사업자의 공사와 관련된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 및 선하지 보상관련</b>	★ ★ ★		○ ○ ○	○		
25. 승강기제조에 관한 사항	①승강기부품 수거 및 운행정지 명령 ②승강기 소유자등의 보고 및 검사 ③승강기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 ★		○ ○ ○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국 청 장	
26.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					○
	② 지역자율방재단 위촉	★					○
	③ 방재단 임무 등에 대한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		○			
	④ 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27.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①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계획, 설명회	★			○		
	② 재난안전네트워크 대표 및 간사단체지정	★		○			
	③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	★		○			
28.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	① 자연재해지원센터 구성·운영계획	★					○
	②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 활동비 지원 계획	★			○		
	③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 인력교육훈련	★		○			
29. 풍수해보험 실시	①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정비	★		○			
	② 손해사정인 모집 및 교육	★		○			
	③ 단체보험 접수처리	★		○			
	④ 보험가입건에 대한 예산지출	★		○			
30.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②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
	③ 회의록 작성	★				○	
	④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	★				○	
31.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	① 풍수해저감종합대책수립을 위한 현장확인	★					○
	②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및 결과보고	★					○
	③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			○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2.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실시	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결과보고 ② 현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③ 각종 훈련 홍보 ④ 훈련준비상황보고 및 추진상황보고 ⑤ 훈련평가보고	★					○
		★					○
		★		○			
		★			○		
		★		○			
3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에 관한사항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안건협약 의뢰 및 결과 통보 ③ 회의록 작성 ④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의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⑤ 기타 행정사항(비협약의 대상포함) 의견 회신	★			○		
		★			○		
		★		○			
		★			○		
		★		○			
34.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관한 사항	①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② 소규모 재난복구 및 예방공사 시행 ③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현장조사 및 결과보고	★			○		
		★		○			
		★		○			
35. 1·2종시설물 안전관리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관리 ② 유지관리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 ③ 각종 점검·보수·보강 실적관리	★		○			
		★			○		
		★		○			
36.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체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③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④ 시설물 등급지정 및 조정	★					○
		★					○
		★		○			
		★		○			

19. 건설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결구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시설동원	①토지, 건설, 건설업체 동원		★			○	
2. 소관업무관련 세외수입 과징	①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고지 ②세외수입 체납처분	★ ★		○ ○			
3.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①전문건설업 등록 ②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지도감독 ③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리 ④건설업의 양도신고와 등록의 이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⑤건설업의 경영지도·실태조사 ⑥건설업자의 제재처분과 청문(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⑦건설업자의 고발 ⑧과태료 부과징수 ⑨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재교부) ⑩전문건설업 휴·폐업 신고 수리 ⑪전문건설업등록 지위승계신고 수리	★ ★ ○ ★ ★ ★ ★ ★ ○ ○ ○		○ ○ ○ ○ ○ ○ ○ ○			
4. 건설기계 관리	①건설기계 사업의 주기장 확인	★	○				
5.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①영업권 및 거주자 실태조사 ②평가의뢰 ③평가수수료 지급 ④보상금책정 및 계약체결요청 가. 10억원이상 나.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다.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라. 1억원미만 ⑤보상금 지급 의뢰 ⑥보상협의 촉구 ⑦손실보상에 관한 보고서 ⑧소재확인 의뢰 및 보상금 수령 확인서 ⑨협의 경위서 ⑩건설사업 관련 이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⑪토지수용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6.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① 재결신청(청구) ② 재결신청 서류 공고 ③ 재결에 따른 의견서 접수 및 처리 ④ 사업자 의견서 제출 ⑤ 보상금 공탁 ⑥ 재결확정증명서 청구 ⑦ 행정 대집행 ⑧ 잔여지의 취득	★			○		
7. 과소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취득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	① 토지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대위(경정) ② 토지표시 변경대위 촉탁등기 신청 ③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 ④ 토지분필 대위 촉탁등기 신청 ⑤ 토지소유권 보존대위 촉탁등기 신청	★		○			
8. 토지 환매에 관한 사항	① 환매 결정 ② 환매 통지 및 환매권 소멸의 공고 ③ 환매 금액협의 ④ 환매요구에 관한 민원	★		○			
9.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①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고지사항 정정신청 ② 각종공부 열람신청	★		○			
10.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등기 재산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	① 소유권 확인 공고 ② 확인서 발급	★			○		
11. 공시송달	① 소재불명 확인서 및 공고·공탁 ② 공시송달 승인 신청	★		○			
12. 공공도로 편입미보상 사유토지에 관한 사항	① 공공도로 편입 사유 토지 조사 ② 공공도로 편입 보상 요구 민원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3.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①보상협의회 개최 ②심의사항 통보 ③보상협의회 위원 위촉	★ ★ ★		○ ○	○ ○		
14. 도시계획	①도시계획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②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③도시계획위원회 운영 ④도시계획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⑤도시기본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15. 온천업무	①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②온천개발 ③온천지역 굴착허가	★ ★ ★			○ ○	○ ○	
16.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①도시계획시설결정(안) 보고서 ②도시계획시설결정(안) 도면작성 ③도시계획(안) 공람공고 ④도시계획(안) 결과보고 ⑤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및 지적승인 고시 ⑥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에 따른 도면 작성 ⑦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행정청) ⑧도시계획사업 준공(행정청) ⑨학교시설사업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17. 도시계획구역 행위 제한	①개발행위허가 및 취소 가. 분과위원회 자문사항 나. 개 별 다. 건축복합 ②개발행위 공사감독 임명 ③개발행위 준공 가. 개 별 나. 건축복합 ④개발행위 준공검사원 임명 ⑤개발행위 허가(공사)기간 연장 ⑥무단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1.토목공사 행정처분	①공사감독 임명 ②준공검사 기한 연기 ③공사 중지 명령 ④설계변경 ⑤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가. 도금액 100백만원이상 나. 도금액 100백만원미만	★		○			
22.토목공사	①공사설계서 작성 ②공사측량 ③도로의 경미한 보수 ④도로개설 지장물 조사보고 ⑤공사감독 일지작성	★		○			
23.도로에 관한 사항	①도로 및 하수에 관한 계획수립 ②관내 전도로 유지보수 공사(예산 설계수반 사항) ③관내 도로 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M 이상 도로설치는 제외) ④육교, 분수대, 터널 및 지하도 관리 (터널 및 분수대의 가전시설 유지관리 제외) ⑤20㎡ 이하 도로의 신설 확장(고속도로 제외) ⑥도로대장 작성 관리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4. 각종 공사	①감리용역시행계획방침 결정		★			○	
	②감리용역설계 예산서	★		○			
	③감리용역 발주 시행품의	★			○		
	④감리용역업체 선정심의	★			○		
	⑤기본 및 실시설계 방침 결정		★			○	
	⑥용역설계서 작성	★		○			
	⑦용역설계 시행품의	★		○			
	⑧착공계, 준공계	★		○			
	⑨관급자재 수불	○					
25. 토목공사 (하수하천공사) 행정 처분	①공사감독 임명	★		○			
	②준공검사 기한 연기		★		○		
	③공사 중지 명령		★		○		
	④설계변경	★			○		
	⑤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가. 도금액 100백만원이상 나. 도금액 100백만원미만		★		○		
		★		○			
26. 토목공사 (하수하천공사)	①공사설계서 작성 가. 총공사금액 1억이상 나. 총공사금액 1억미만	★			○		
	②공사측량	★		○			
	③도로하천의 경미한 보수	★		○			
	④도로개설 지장물 조사보고	★		○			
	⑤공사감독 일지작성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7. 각종 (하수·하천) 공사	①감리용역설계 예산서		★		○		
	②감리용역 발주 시행품의		★		○		
	③감리용역업체 선정심의		★		○		
	④기본 및 실시설계 방침 결정	★				○	
	⑤용역설계서 작성	★		○			
	⑥용역설계 변경 시행품의	★		○			
	⑦착공계, 준공계	★		○			
	⑧관급자재 수불	○					
28.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①행정재산(구거)용도폐지	★			○		
	②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 굴착	★			○		
	③점용료, 사용료의 면제	★		○			
	④장애물 제거 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		○			
	⑤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			○		
	⑥공유수면 사용허가의 취소	★			○		
	⑦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			
	⑧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한 조사 및 점용허가	★		○			
	⑨공유수면 점용권리의 상속 신고	○					
	⑩공작물 설치공사, 착·준공 신고	★		○			
	⑪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			○		
	⑫공유수면 점용(공작물 설치)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신청·변경신고	○					
	⑬공유수면내 토석채취(투기) 허가 신청	★			○		
	⑭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특정 지역 (지정항만 구역채취)안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 점용 및 사용허가 나. 원상회복,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공익을 위한 감독, 손실보상, 법령위반자, 감독단속 및 조사상 필요한 처분 다. 권리의무의 상속권리 승인, 법인의 권리승계 처분 및 변경사항 처리	★ ★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9.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다음, 지정항만 구역 제외)	①매립 면허	★				○	
	②매립공사 착수 및 준공기간 연장허가	★			○		
	③매립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		○			
	④매립공사 준공인가 매립지 사용 및 인가전 매립지 사용허가	★			○		
	⑤매립면허 효력회복 승인	★		○			
	⑥면허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		○			
	⑦면허신청인 명의 변경 신고수리	★		○			
	⑧매립목적 또는 공사 계획 변경	★			○		
	⑨매립목적 또는 공사 계획변경 연기	★			○		
	⑩권리의무 양수, 양도 및 승계허가	○					
	⑪타인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허가	★		○			
	⑫대리인 지정 신고	★		○			
30.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	①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수리	○					
	②하천점용 허가등(주거, 공유수면)	★		○			
	③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			○		
	④실효전 허가의 효력회복의 조치	★			○		
	⑤하천 감시원의 임명	★		○			
	⑥보고의 수리와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	★		○			
	⑦공용부담금의 손실보상과에 관한 협의	★			○		
	⑧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	★			○		
	⑨골재취업자의 지도감독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관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1.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	①수리권의 조정 제한	★			○		
	②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			○		
	③필요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		○			
	④점용과 사용에 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행정 대집행등)	★		○			
	⑤법령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			○		
	⑥허가효력의 정지 처분 및 효력회복 조치	★			○		
	⑦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이전 및 제거명령	★		○			
	⑧공사중지 명령	★			○		
	⑨토지 점용허가 신청	★		○			
	⑩유수인용허가 신청	★		○			
	⑪지하유수 채취허가 신청	★		○			
	⑫공작물 설치(개축, 변경, 제거) 허가신청	★			○		
	⑬하천권리의 의무양수도 허가신청	○					
	⑭토지(사력, 하천, 산출물) 채취허가	★				○	
	⑮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			○		
	⑯하천부속물의 점용	★		○			
	⑰죽목의 운반(선박의 운항등) 허가신청	★		○			
	⑱하천공사(단, 2개구이상 경계를 이루는 하천제외)	★			○		
	⑲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	★			○		
	⑳하천매입 토지의 고시	★			○		
	㉑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 폐지고시		★				○
	㉒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				○
	㉓하천공사 시행의 공고	★			○		
	㉔하천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			
	㉕하천감시원의 임명 및 필요조치를 명하는 권한행사 조치	★		○			
	㉖폐천부지 등의 고시	★			○		
32. 폐천부지등의 교환 양여	폐천부지 등의 교환 양여		★				○
33. 건축허가신청 관련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검사	①건축 연면적 2,000㎡ 이하 4층까지 건축물	○					
	②건축 연면적 2,000㎡ 초과 5층이상 건축물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34. 하수도에 관한 사항	①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과 유지관리	★			○		
	②하수도 사용의 공고	★		○			
	③점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			○		
	④부대공사의 시행 및 공사의 중지명령	★		○			
	⑤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			
	⑥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			○		
	⑦수선유지 명령	★		○			
	⑧공공하수도 대장정리	○					
	⑨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			
	⑩허가의 취소,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			○		
	⑪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폐지	★			○		
	⑫하수관련사무 전반 및 소규모 소파수선 (개소당 공사금액 500만원 미만)	★			○		
35.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①자전거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		○			
	②자전거 도로 대장작성 관리	○					

20. 건 축 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형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국장	
1.건축업무 연간 기본 계획 수립	①기본계획 수립	★					○
2.위반 건축물 관리	①기본계획 수립 ②단속 및 철거 ③계고서 발급 및 고발 ④행정대집행(건축법 위반) ⑤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 ★ ★ ★ ★		○ ○ ○ ○	○		
3.건축법상 도로 관리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4.공동주택 관리	①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②주택조합 설립인가 ③주택조합 설립변경 승인 ④주택조합 설립해산 인가 ⑤공동주택 행위 허가 및 신고 ⑥주택자금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⑦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⑧1,2종 시설물 안전점검 ⑨주택관리업신고 ⑩주택관리사 배치신고 ⑪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⑫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통보 및 일반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가설건축물 건축허가등	①가설건축물 허가(신고) ②착공신고 ③사용승인 ④존속기간 연기승인	★ ○ ★ ★		○ ○ ○			
6.건축에 관한 통계	① 건축·주택행정일반 및 주택 통계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7. 건축 허가 민원	①건축허가(협의, 용도변경등)						
	가. 지상16층이상 20층이하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10만㎡미만 건축물	★			○		
	나. 지상5층이상 15층이하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5만㎡미만 건축물	★		○			
	다. 지상4층이하 또는 연면적 2천㎡미만 건축물	○					
	②건축신고	★	○				
	③용도변경 신고(사용승인 포함)	★	○				
	용도변경 허가(사용승인 포함)	○					
	④착공신고	○					
	⑤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가. 지상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		○			
나. 지상4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0㎡미만	○						
다. 건축신고 건축물	★	○					
⑥건축공사 착수기간 연기승인	○						
⑦건축주 명의변경 승인	○						
⑧건축허가 취소	★		○				
⑨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			○			
⑩연면적 1,500㎡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		○				
8.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주민의견수렴	★		○			
	②영향평가 의견제출	★		○			
	③영향평가서 진달	★			○		
9. 건축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건축선 지정고시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수립지정 신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정비사업)	★					○
	②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지정 변경	★			○		
	③ 구역지정 실효		★			○	
	④ 사업시행자 지정	★			○		
	⑤ 조합설립 인가	★			○		
	⑥ 사업시행 인가(변경)	★		○			
	⑦ 관리처분 계획인가	★		○			
	⑧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		○			
	⑨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		○			
	⑩ 재개발관련 각종 경미한 변경 사항	★		○			
	⑪ 재개발 업무에 대한 일반행정사무	★		○			
	⑫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		○			
	⑬ 정비사업관련 민원처리(수정)	★			○		
	가. 일반민원	★		○			
	나. 다수인 관련민원	★			○		
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구 신청	★			○			
⑮ 안전진단 신청 결정	★			○			
1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① 과징계획 수립		★		○		
	② 징수결정 및 (예정)고지						
	가. 4백만원 초과	★			○		
	나. 4백만원 이하	★		○			
	③ 통지확인 및 수납소인	○					
	④ 체납처분	★		○			
⑤ 부과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처리	★			○			
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물납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사항	①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신청	★					○
	②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					○
	③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		○			
	④관계행정기관 협의	★		○			
	⑤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	★		○			
	⑦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		○			
	⑧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변경사항	★		○			
17.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 사항	①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②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통보 및 일반행정	★		○			
18. 학교용지 부담금환급에 관련 사항	①환급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②환급조정위원회 운영 결과 통보 및 환급 관련 일반행정	★		○			
19.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점검사항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점검 및 행정조치	★		○			

21. 토지정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종합기획	①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			○	
2. 개발부담금	① 기본계획 수립 ② 거래가격 신고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신고 ③ 개발 부담금 산정 및 예정통지 ④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감액결정 - 부과(감액)금액 1천만원 미만 - 부과(감액)금액 1천만원 이상 및 고지전 심사 청구사항 ⑤ 납부고지서 발부 ⑥ 가산금조정결의·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⑦ 발급납부 고지정정 통보 ⑧ 물납신청 및 징수 ⑨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분할납부신청서 수리 및 허가 ⑩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⑪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⑫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토지거래 규제	① 선매협의 및 선매자 지정 통보 ② 토지 등 매수청구 ③ 불허가 처분 및 권고·허가 처분 ④ 거래계약허가 협의 ⑤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 ⑥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현황보고 ⑦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 ★ ★ ★ ★ ★ ★		○ ○ ○ ○ ○ ○ ○			
4.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① 부동산계약 검인 ② 해태자 과태료 부과, 징수	○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5. 지가조사	①기본계획 수립	★				○	
	②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			
	③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④주민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수정)	★		○			
	⑤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심의 결정	★				○	
	⑥개별공시지가 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		○			
	⑦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	○					
	⑧개별공시지가 조사 타인토지 출입허가	★		○			
	⑨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의뢰	★		○			
	⑩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작성	○					
	⑪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 작성	○					
	⑫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및 출력	○					
	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해촉	★					○
	⑭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	★				○	
6. 부동산중개업	①신규등록	★		○			
	②영업장소 이전신고	○					
	③휴·폐업 신고	○					
	④중개업소 지도·단속	★			○		
	⑤영업보증 설정신고	○					
	⑥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			
7.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①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
	②도로구간설정	★					○
	③도로명 부여	★					○
	④건물번호 부여	○					
	⑤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		○			
	⑥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관리	★		○			
	⑦기본도 작성 및 D/B전산 구축관리	○					
	⑧도로명자료 제공	★		○			
	⑨도로명시설이용 광고	★			○		
	⑩도로명 통합센터 운영	★		○			
	⑪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
	⑫공적장부의 주소전환	★				○	
	⑬과태료부과	★		○			
	⑭서면민원 등 주민신청 민원처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8.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지명위원회 운영	★					○
	②심의결과 고시	★					○
	③회의록 작성	★		○			
9.새주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새주소 위원회 운영	★					○
	②심의결과 고시	★					○
	③회의록 작성	★		○			
10.토지이용계획 변동정리에 관한 사항(신설)	①토지이용계획도면 작성 및 재작성	★		○			
	②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전산정리	○					
11.지적공부	①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			
	②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			○		
	③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			○		
	④지적관련서류 전산화 작업	★		○			
12.지적일반	①지적통계 보고	★		○			
	②토지 이동지 정리에 관한 사항	★		○			
	③토지분할 허가	★		○			
	④축척변경에 관한 사항	★			○		
	⑤신규등록, 해면성 말소, 지적복구	★			○		
	⑥등록사항 정정	★		○			
	⑦지적법 위반 과태료 부과	★		○			
	⑧지적정보센타 전산자료 제공	★	○				
13.지적측량	①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			
	②지적측량 성과 검사	★		○			
	③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		○			
	④삼각점, 수준점 실태조사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형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국 장	
14. 지적전산	①지적전산 운영	★		○			
	②토지소유권 전산자료 오기정정	★	○				
	③토지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	★	○				
	④토지등기변동자료 전산정리	○					
	⑤지적전산정보제공	★		○			
15. 등록번호 부여	①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	○				
	②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					
16. 건축물대장 정리	①건축물대장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			
	②건축물대장 작성(신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처리	○					
	③건축물표시(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		○			
	④건물등기 변동자료 전산정리	○					
	⑤말소신청서 및 철거명실에 따른 말소처리	★		○			
	⑥건축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	★	○				
17.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①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		○			
	②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		○			
18. 소송업무 수행	①국가대상의 소유권 확인 소송 업무(미등기 주소 등록에 한함)	★		○			
19. 창구민원	①구토지(임야)대장 증명 발급·열람	○					
	②폐쇄지적(임야)도 증명 발급·열람	○					
	③구건축물대장 증명 발급·열람	○					
	④폐쇄토지이용 계획확인확인서 발급	○					
20. 외국인토지	①외국인 토지취득 가. 신고 및 계속 보유신고	○					
	나. 허가	★		○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		○			
③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관련 벌금에 관한 사항	★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1.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			
	②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및 청문통지	★		○			
	③물납신청 및 허가	★		○			
22.부동산거래 신고업무	①부동산거래신고	○					
	②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22. 주차관리팀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전 결 구 분				구 청 장
		담 당 자	팀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①주·정차 단속종합계획 수립	★		○		
	②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변경 재임명	★	○			
	③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감액 결정	★	○			
	④주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			
	⑤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동차 서순처리전	★	○			
	⑥단속장비 관리 및 차량운영	★	○			
2.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①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계획수립	★		○		
	②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감액결정	★	○			
	③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	★	○			
	④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	○			
	⑤교통유발 부담금 압류 해제	★	○			
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에 관한 사항	①주차위반과태료 과징계획 수립	★		○		
	②과태료 징수결정 및 고지	★	○			
	③납부자영수필 통지확인, 수납소인	○				
	④과태료 체납처분	★	○			
	⑤과태료 압류 해제	★	○			
	⑥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처리	★	○			
4.주차장특별회계관리	①세입징수 보고	★		○		
	②자금운용 및 배정 관련업무	★	○			
5.공익근무요원 및 기간제 등 관리	공익근무요원 및 기간제 등 관리	★	○			

**예 규**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부서별·동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9 3 5

109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부서별·동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b>합 계</b>			<b>393</b>			
<b>실</b>	기 감 사 실	일 반 직	5 급 1 6 급 6 7 급 11 8 급 10 9 급 -	행정1 행정5, 전산1 행정8, 시설1, 전산2 행정7, 전산3		
		기 능 직	7 급 1 9 급 1	사무1 조무1		
		소 계		<b>30</b>		
		총 무 과	일 반 직	정무직	1	정무1
				3 급 1 4 급 1 5 급 2 6 급 6 7 급 9 8 급 6	행정1 행정1 행정2 행정6 행정9 행정6	
	기 능 직			6 급 1 7 급 1 8 급 1 9 급 2	조무1 운전1 사무1 사무1, 운전1	
	소 계			<b>31</b>		
	문 체 육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4 7 급 4 8 급 5	행정1 행정4 행정4 행정5
		기 능 직	6 급 1 8 급 1		기계1 조무1	
		소 계			<b>16</b>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b>총 무 과</b>	재 무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3 7 급 6 8 급 4	행정1 행정2, 행정·통신1 행정4, 통신1, 시설1 행정3, 통신1				
			기 능 직	7 급 1 8 급 1 9 급 2 10 급 1	조무1 운전1 교환1, 운전1 교환1			
			소 계		<b>19</b>			
			세 무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6 7 급 9 8 급 13 9 급 -	행정1 세무6 세무9 세무12, 전산1		
		소 계			<b>29</b>			
		민 원 사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4 7 급 5 8 급 6	행정1 행정4 행정5 행정5, 전산1	
						기 능 직	7 급 2 8 급 1 9 급 1 10 급 -	사무1, 조무1 사무1 사무1
						소 계		<b>20</b>
	체 납 정 리 팀		일 반 직	6 급 2 7 급 2 8 급 4 9 급 -		행정·세무2 세무2 행정1, 세무3		
				소 계		<b>8</b>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b>주 민 생 활 지 원</b>	복 지 과	일 반 직	4 급 1 5 급 1 6 급 5 7 급 5 8 급 7 9 급 -	행정·기술1 행정1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행정2, 사회복지3 사회복지7			
			소 계		<b>19</b>		
			주 민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5 7 급 4 8 급 3 9 급 2	행정1 행정4, 행정·사회복지1 행정3, 사회복지1 행정1, 사회복지2	
					기 능 직	8 급 1 9 급 1 10 급 -	사무1 조무1
					소 계		<b>17</b>
		청 정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4 7 급 7 8 급 4 9 급 2 10 급 2	행정1 행정3, 행정·공업1 행정5, 환경1, 공업1 행정3, 환경1 운전2 운전2
						기 능 직	8 급 2 9 급 2 10 급 3
			소 계			<b>25</b>	
			환 경 과	일 반 직		5 급 1 6 급 3 7 급 5 8 급 12	행정·환경1 행정·환경1, 환경·공업1, 보건1 행정2, 환경1, 보건2 행정3, 환경2, 공업1, 보건2, 환경·공업1, 행정·식품위생3
	기 능 직					9 급 2 10 급 -	조무2
	소 계				<b>23</b>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주민생활지원	청정산업 녹지과	일	5급 1	행정·녹지1
		반	6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직	7급 6	행정1, 녹지2, 공업1, 해양수산1, 수의·농업1
		직	8급 4	행정1, 공업1, 녹지2,
		직	9급 -	-
	기능직	7급	1	사무1
		10급	2	조무1, 운전1
	소 계		17	
	자원봉사 코디팀	일	6급 2	행정2
		반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직	8급 2	사회복지2
		소 계		6
	경제진흥팀	일	6급 2	행정2
		반	7급 3	행정2, 공업1
		직	8급 -	-
소 계		5		
도시국	교통행정과	일	4급 1	기술1
		반	5급 1	행정1
		직	6급 4	행정3, 행정·공업1
		직	7급 4	행정4
		직	8급 7	행정6, 공업1
	기능직	10급 3	조무3	
	소 계		20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도시국	건축과	일	5급 1	시설1		
		반	6급 3	시설2, 행정·시설1		
		직	7급 4	행정1, 시설3		
		직	8급 4	행정1, 시설3		
		직	9급 2	시설2		
		기능직	6급	1	조무1	
			9급	1	조무1	
	10급		1	조무1		
	소 계		17			
	토지정보과	일	5급	1	시설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3	
		직	8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기능직	8급	1	조무1
				10급	2	조무2
	소 계		16			
주관차량팀	일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1	세무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운전1		
		10급	3	조무2, 사무1		
소 계		10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분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도시국	디자인과	일	5급 1	행정1	
		반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직	7급 6	행정5, 시설1	
		직	8급 3	행정1, 시설1, 녹지1,	
		기능직	7급	1	조무1
			9급	1	조무1
	10급		1	조무1	
	소 계		18		
	재난안전관리과	일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시설1, 공업1
			7급	6	행정3, 시설1, 공업2
			8급	6	행정3, 시설1, 공업2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3	조무1, 전기1, 기계1
			8급	2	전기2
10급	1	운전1			
소 계		24			
건설과	일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10	행정4, 시설6	
		8급	3	행정2, 시설1	
		9급	2	시설2	
	기능직	9급	1	사무1	
		10급	2	운전2	
소 계		23			

동 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합 계		146		
구포1동	일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소 계		10	
구포2동	일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소 계		11	
구포3동	일	5급	1	행정·보건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소 계		11	

종 별	직 급 별	정원	직 령 별 정 원
금 구 동	일 반 직	5 급	행정·시설 1
		6 급	행정1, 사회복지1
		7 급	행정2, 사회복지2
		8 급	행정4, 사회복지3
		9 급	행정2, 사회복지8
	소 계	24	
화 명 1 동	일 반 직	5 급	행정·시설 1
		6 급	행정2
		7 급	행정1
		8 급	행정4, 사회복지1
		9 급	행정1, 사회복지1
	소 계	11	
화 명 2 동	일 반 직	5 급	행정1
		6 급	행정1
		7 급	행정1
		8 급	행정2, 사회복지1
		9 급	행정2, 사회복지1
	소 계	9	
화 명 3 동	일 반 직	5 급	행정1
		6 급	행정1
		7 급	2 행정2
		8 급	3 행정2, 사회복지1
		9 급	3 행정3
	소 계	10	
덕 천 1 동	일 반 직	5 급	행정·보건1
		6 급	행정2
		7 급	3 행정2, 사회복지1
		8 급	2 행정1, 사회복지1
		9 급	4 행정1, 사회복지3
	소 계	12	

종 별	직 급 별	정원	직 령 별 정 원
덕 천 2 동	일 반 직	5 급	행정1
		6 급	행정2
		7 급	1 행정1
		8 급	4 행정3, 사회복지1
		9 급	2 사회복지2
	소 계	10	
덕 천 3 동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 급	2 행정1, 사회복지1
		8 급	3 행정2, 사회복지1
		9 급	4 행정1, 사회복지3
	소 계	12	
만 덕 1 동	일 반 직	5 급	1 행정·환경1
		6 급	1 행정1
		7 급	2 행정1, 사회복지1
		8 급	3 행정3
		9 급	1 사회복지1
	소 계	8	
만 덕 2 동	일 반 직	5 급	1 행정·환경1
		6 급	2 행정2
		7 급	2 행정2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9 급	-
	소 계	10	
만 덕 3 동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1 행정1
		7 급	1 행정1
		8 급	3 행정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소 계	8	

**훈 령**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9 3 5

178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54명”을 “147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7조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 제외) 정수

부 서 별	계	단순 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준용 인력			
		소계	기능보유원 노무원	단순무인부 조인부	현업부			소계	공공노사관리원	체서관리원	체육단속 등
총 계	134	10	5	5	14	98	12	5	4	3	
행정 지원과	1	1		1							
문화 체육과	4						4		4		
재 무 과	2	2	1	1							
민원 봉사과	1	1		1							
청 소 행정과	98					98					
청정산업 녹지과	6	1	1				5	5			
도시 디자인과	13				10		3			3	
재난안전 관리과	1	1	1								
건 설 과	4				4						
문화 빙상센터	3	3	2	1							
의회 사무국	1	1		1							

2. 청원경찰 정수

부서별	합 계	경비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 계	녹지훼손 단속	하천감시	그린벨트 단속
총 계	13	7	6	1	3	2
행정 지원과	2	2				
청정산업 녹지과	1		1	1		
도시 디자인과	2	2				
건설과	5		5		3	2
디지털 도서관	3	3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9 3 5

179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실”을 “민원실 및 당직실”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민원 접수사항 통보문으로”를 “전자계시판에 게시하고, 민원실에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인과 민원실로 알려야 한다”를 “민원인에게 알리고 전자계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2009 - 163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조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3 5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조성과 지원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 및 절주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장소 등의 금연 및 절주 권장구역 지정
- 클린에어존 지정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보건소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794)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9 - 172

**가**

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5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 제정

**2.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2009. 01. 01)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장이 되며, 위원은 7명이상 10명 이내로 함

<p>○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평가위원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이상 공무원, 기술직렬 5급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이상의 해당분야 전공자</li> <li>- 기술사, 박사학위소지자, 마을주민대표,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ul> <p>나. 후보자 신청을 받아 예비위원 선정, 예비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위원 선정하는 등 위원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p> <p>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제안서의 배부와 제안서에 대한 설명 등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p> <p>라. 평가의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 산출하여 평균점수로 함(안 제8조)</p> <p><b>4. 의견제출</b></p> <p>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309-4148)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li> <li>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li> <li>다. 기타 참고사항 등</li> </ul>	
---	--